



kiri Weekly  
포커스·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K O R E A  
I N S U R A N C E  
R E S E A R C H  
I N S T I T U T E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 Contents\_ 금융보험 해설

### I 금융상품의 이해

|                                 |     |     |
|---------------------------------|-----|-----|
| 금융상품의 이해 (15): 신용연계채권(CLN)      | 이경아 | 193 |
| 금융상품의 이해 (16): 부채담보부증권(CDO) (1) | 이경아 | 196 |
| 금융상품의 이해 (17): 부채담보부증권(CDO) (2) | 이경아 | 198 |
| 금융상품의 이해 (18): 부채담보부증권(CDO) (3) | 이경아 | 200 |
| 금융상품의 이해 (19): 부채담보부증권(CDO) (4) | 이경아 | 202 |
| 금융상품의 이해 (20): 목표기간펀드(TDF) (1)  | 이경아 | 204 |
| 금융상품의 이해 (21): 목표기간펀드(TDF) (2)  | 이경아 | 206 |

### II 손해보험의 이해

|                                  |     |     |
|----------------------------------|-----|-----|
| 손해보험의 이해 (15): 정책성보험의 개념 및 종류    | 김동겸 | 211 |
| 손해보험의 이해 (16): 정책성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 김동겸 | 213 |
| 손해보험의 이해 (17): 정책성보험 - 풍수해보험     | 김동겸 | 216 |
| 손해보험의 이해 (18): 정책성보험 - 가축재해보험    | 김동겸 | 218 |
| 손해보험의 이해 (19): 정책성보험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김동겸 | 220 |

### III 연금제도의 국제 비교

|                                    |     |     |
|------------------------------------|-----|-----|
| 연금제도의 국제 비교 (1): 연금제도의 체계 및 유형     | 김동겸 | 225 |
| 연금제도의 국제 비교 (2): 최저소득보장제도          | 김동겸 | 228 |
| 연금제도의 국제 비교 (3): 연금제도의 모수 - 연금수급연령 | 김동겸 | 230 |
| 연금제도의 국제 비교 (4): 연금제도의 모수 - 보험요율   | 김동겸 | 232 |
| 연금제도의 국제 비교 (5): 연금제도의 모수 - 적립률    | 김동겸 | 235 |

# 금융보험 해설 \_Contents

## IV

### 퇴직연금의 이해

|                                     |     |     |
|-------------------------------------|-----|-----|
| 퇴직연금의 이해 (2):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 오병국 | 241 |
| 퇴직연금의 이해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용 | 오병국 | 243 |
| 퇴직연금의 이해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용 | 오병국 | 245 |
| 퇴직연금의 이해 (5):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및 업무수행     | 오병국 | 247 |
| 퇴직연금의 이해 (6): 퇴직연금제도 운영 관계자의 책무와 감독 | 오병국 | 250 |
| 퇴직연금의 이해 (7):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장치        | 오병국 | 252 |
| 퇴직연금의 이해 (8):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특징         | 오병국 | 254 |
| 퇴직연금의 이해 (9):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유형         | 오병국 | 256 |
| 퇴직연금의 이해 (10): 퇴직연금의 계약구조           | 오병국 | 258 |

## V

### 기타

|                                     |     |     |
|-------------------------------------|-----|-----|
|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1) :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와 역사 | 이아름 | 263 |
|-------------------------------------|-----|-----|

# 금융보험 해설 / 금융상품의 이해

- |                                    |     |
|------------------------------------|-----|
| 1. 금융상품의 이해 (15): 신용연계채권(CLN)      | 이경아 |
| 2. 금융상품의 이해 (16): 부채담보부증권(CDO) (1) | 이경아 |
| 3. 금융상품의 이해 (17): 부채담보부증권(CDO) (2) | 이경아 |
| 4. 금융상품의 이해 (18): 부채담보부증권(CDO) (3) | 이경아 |
| 5. 금융상품의 이해 (19): 부채담보부증권(CDO) (4) | 이경아 |
| 6. 금융상품의 이해 (20): 목표기간펀드(TDF) (1)  | 이경아 |
| 7. 금융상품의 이해 (21): 목표기간펀드(TDF) (2)  | 이경아 |





## 금융상품의 이해 (15): 신용연계채권(CLN)

이경아 연구원

■ 신용연계채권(CLN: Credit-Linked Notes)은 채권수익률에 준거자산의 신용위험을 연계시킨 신용파생 상품으로서 ‘채권 + 신용부도스왑(CDS: Credit Default Swap)’ 투자와 유사함.

- 신용연계채권(이하 ‘CLN’이라 함)은 우발적 신용사건의 손실보전 의무에 대한 계약인 신용부도스왑(이하 ‘CDS’라 함)을 채권 형태로 증권화한 것으로서 CDS가 내재된 구조화된 채권임.
- CLN 투자자는 CLN 발행자의 무담보채권에 대한 투자자(buyer for unsecured bond)인 동시에 내재된 CDS가 참조하는 준거자산에 대한 신용위험 투자자(buyer for credit risk)로 간주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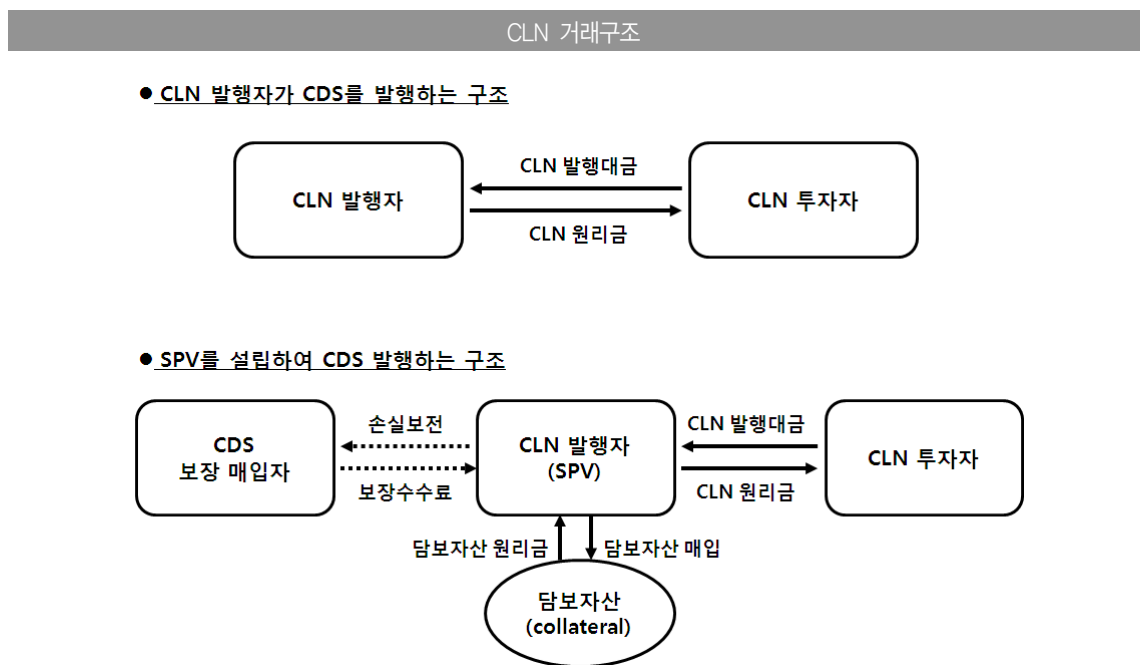
■ CLN은 신용위험의 이전수단이라는 점에서 CDS와 유사한 효용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거래구조, 현금흐름, 거래상대방위험(counterparty risk) 정도에서 CDS와 차이점을 지님.

- 첫째, CDS는 별도의 초기 현금흐름 없이 보장매입자가 보장매도자에게 보장수수료(CDS premium)만 지불하면 거래가 성립하는 unfunded structure인 반면, CLN은 채권매입을 위한 초기 자금조달이 수반되는 funded structure임.
- 둘째, CLN은 CDS와 마찬가지로 신용위험에 대한 헤지/투자가 가능하지만 파생상품이 아니라 채권으로 분류됨.
  - 파생상품거래 제약조건 등이 비교적 까다로운 연기금, 보험사들도 CLN 투자에 참여할 수 있음.
- 셋째, CDS 거래에서 보장매도자에 비해 보장매입자의 거래상대방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CLN의 경우 채권거래 대금을 사전에 수취하므로 보장매입자의 거래상대방 위험이 제거될 수 있음.
  - CDS 거래에서 보장매입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도 보장매도자 부도 시 손실보전을 받을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 보장매도자는 상대적으로 거래상대방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움.
- 넷째, CDS가 부외계정(off-sheet) 거래인 반면 CLN은 부내계정(on-balance) 거래임.

■ CLN 거래에서 CLN 발행자는 신용위험 보장매입자(protection buyer/risk seller)이며, CLN 투자자는 신용위험 보장매도자(protection seller/risk buyer)임.

- CDS 거래에서 보장매입자는 보장수수료를 보장매도자에게 지급하지만, CLN 거래에서는 보장수수료가 CLN 채권의 높은 이자(coupon)의 형태로 보장매도자에게 지급되며, 거래 개시 시점에서 CLN 투자자는 CLN 발행자에게 채권대금을 지급함.

〈그림 1〉 CLN 거래구조



■ CLN 거래구조는 ① ‘CDS 보장매도자 = CLN 발행자’인 경우와, ② ‘CDS 보장매도자 ≠ CLN 발행자’인 경우가 있음.

- ①에서 CDS 보장매도자는 별도의 CDS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자신이 직접 CLN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때 ‘CLN 신용등급 ≤ CLN 발행자의 신용등급’으로 결정됨.
- ②에서 CDS 보장매도자는 SPC를 설립하고 SPC가 CLN 발행자가 되어 SPC와 별도의 CDS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CLN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로, 만약 CLN 발행대금으로 신용도가 높은 국채 등의 담보자산을 매입하게 될 경우에는 담보자산의 신용보강에 의해 ‘CLN 신용등급 ≥ CLN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가능함.

- 어느 경우이던 부도 발생 시 CLN 원리금의 가치는 원리금 전액이 아닌 회수가치(recovery)만을 지급받게 됨.

■ CLN 이자율은 CLN 발행자의 일반 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이는 CLN 발행자의 조달금리에 준거자산의 신용위험프리미엄(credit risk premium of reference asset)이 추가적으로 가산되기 때문임.

- {CLN 수익률 = 무위험채권수익률( $R_f$ ) + CLN 발행자 신용위험프리미엄( $RP_{CLN\text{발행자}}$ ) + 준거자산 신용위험프리미엄( $RP_{\text{준거자산}}$ )}임.
- CLN 발행자는 신용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CLN 투자자는 고수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CLN 거래가 발생함.

■ CLN 거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이점을 지님.

- CLN은 실질적인 자금의 교환이 일어나는 증권이므로 CDS 등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제한 규정이 있는 연기금, 보험회사 등의 신용위험 투자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준거자산 신용위험프리미엄 상당의 수익률 제고가 가능함.
  - 예를 들어, 조세규정/거래제한 등으로 투자가 용이하지 않은 이머징 마켓이나 특정 신용등급 이하 거래상대방 거래제한 규정이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신용등급이 높은 SPC가 발행한 CLN을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해당 국가나 낮은 신용등급의 준거자산에 투자할 수 있음.
- CLN 발행자는 CLN 발행대금을 확보함으로써 CDS 발행 준거자산의 부도로 인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음. **kiri**



## 금융상품의 이해 (16): 부채담보부증권(CDO) (1)

이경아 연구원

■ 부채담보부증권(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이란 회사채, 대출채권, CDS 등 현금흐름을 갖는 다양한 자산집합(reference pool)을 기초로 발행되는 구조화 증권

- 부채담보부증권(이하 'CDO'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 ABS가 동일 기초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것과 달리 대출, 채권, CDS 등 현금흐름을 갖는 다수의 기초자산을 담보로 발행됨.
- 보유자산을 신용등급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점은 ABS와 동일함.
- CDO는 지난 10년간 가장 크게 성장한 구조화 금융 상품 중 하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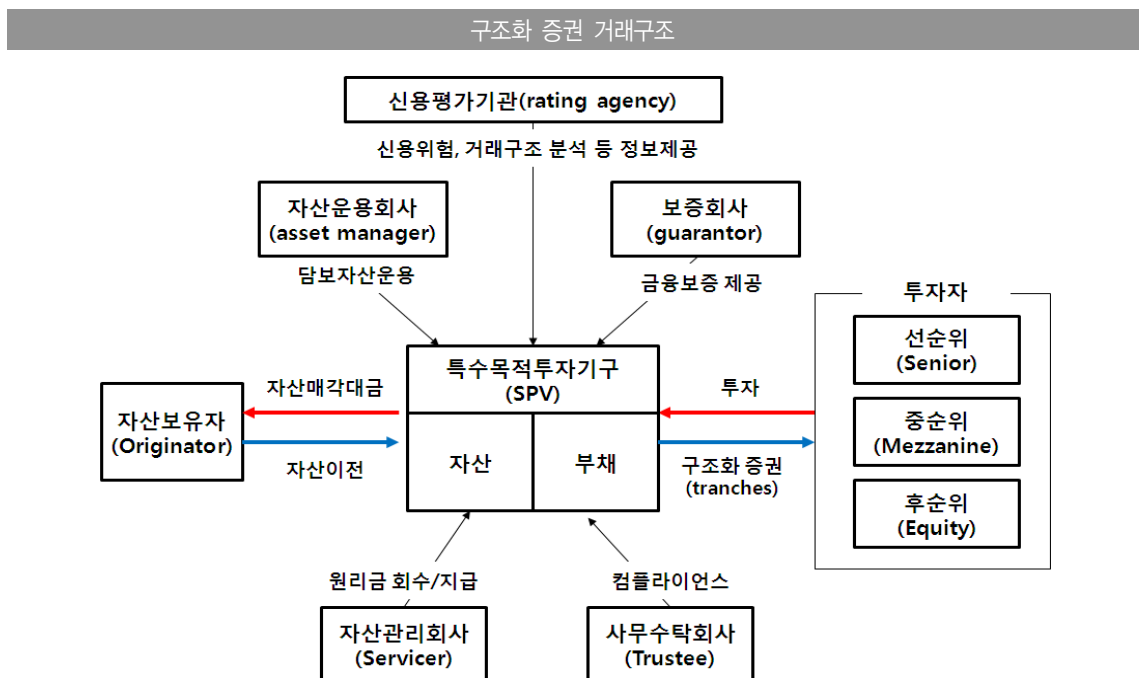
■ 증권화(securitization)는 다양한 신용등급의 자산을 결합한 뒤 이를 신용등급별 증권(tranching, 이하 '트랜칭'이라 함)으로 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칭

- 트랜칭의 목적은 최소한 하나의 위험등급 증권에 대해 결합자산의 평균 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게 함으로써 자본조달비용을 절감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을 활용
  -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은 발행자가 기초자산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하여 기대손실 규모를 파악한 후 이러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 신용등급을 제고하는 방법임.
- 일반적으로 CDO 발행에서 가장 많은 구조는 'Senior-Mezzanine-Equity'이며, 각 트랜치는 서로 다른 위험/수익구조를 지님.
  - 예를 들어, 가장 후순위인 Equity증권은 부도나 신용등급 하락 등 불리한 상황 발생 시 첫 번째 손실흡수자(loss absorber)가 되며, 이로 인해 선순위인 Senior 투자자는 하위계층 투자자의 손실흡수로 인해 부도위험으로부터 상당부분 보호될 수 있음.<sup>1)</sup>

■ 구조화 증권(Structured Securities)의 주요 참가자는 자산보유자, 투자자, 특수목적투자기구, 자산관리회사, 사무수탁회사, 자산운용회사, 보증회사, 신용평가회사 등임(〈그림 1〉 참조).

- 자산보유자(originator)는 대출, 채권 등 자산을 보유한 기관
- 특수목적기구(SPV)는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이전받게 되며, 새로운 부채담보부증권을 발행함으로써 담보자산 매입자금을 조달함.
- 사무수탁회사(trustee)는 자산보유 현황 및 준법감시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며, 자산관리회사(servicer)는 자금의 회수 및 현금흐름 분배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함.
- 신용평가회사(financial guarantor)는 담보자산의 신용평가 및 구조분석, 제3자 기관에 대한 분석, 투자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등을 담당함. **키리**

〈그림 1〉 구조화 증권 거래구조



자료: BIS, The role of rating in structured finance: Issues and implications.

1) 이러한 현금흐름 구조를 cash flow waterfall payment라고 함.



## 금융상품의 이해 (17): 부채담보부증권(CDO) (2)

이경아 연구원

■ 구조화 증권은 위험결합과 트랜칭(risk pooling and tranching) 과정을 거쳐 위험등급별로 발행되며, 전통적 채권과는 다른 복잡성(complexity) 및 위험 특성(risk properties)을 지님.<sup>1)</sup>

- 첫째, 일반 채권에 비해 구조화 증권의 신용등급은 시간 의존적(time-dependent)임.
  - 금융위기와 같이 불리한 시장 상황이 지속되면서 신용경색이 초래될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위험집단에 속한 자산 간 부도상관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익률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둘째, 채권에 비해 구조화 증권의 신용등급은 구조 의존적(structure-dependent)임.
  - 예를 들어, 트랜치 간 우선순위 설정, 담보자산 운용 사항 및 운용수익률 등에 따라 투자자 간 위험부담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상품의 구조설계에 따라 투자자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음.
- 셋째, 동일 신용등급이어도 일반 채권과 구조화 증권의 손실발생 확률의 개념은 다를 수 있으며, 사전적으로 예상치 못한 손실(ex-ante unexpected loss)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 채권과 구조화 증권의 신용등급이 같고, 기대예상손실 값이 같을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상황 하의 특정 손실을 의미하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음.
  - 예를 들어, 부도 발생 시 일반 채권의 경우 '회수율(recovery rate) > 0'이지만 하면 원금의 일정 부분 '원리금 X (1-회수율)'에 대해서만 손실이 발생하지만, 후순위 구조화 증권의 경우 일반 채권과 동일한 BBB 신용등급이라도 부도 시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음.
- 넷째, 일반 채권에 비해 구조화 증권은 복잡한 상품 구조를 갖는데, 이의 주요한 원인은 ① 위험결합과 위험등급별 증권화 과정(risk pooling and tranching), ② 구조화 증권의 상품구조에 담보자산운용자 같은 제 3의 참여자 포함 등임.
  - 일반 채권 발행 시에는 특수목적기구나 담보자산운용자가 필요하지 않으나 구조화 증권에는 발행자·투자자 이외에도 거래당사자가 필요하므로 이로 인한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음.

1) CDO는 대표적인 구조화 금융상품으로 일반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조화 금융 중심으로 정리함.

– 구조화 증권은 구조설계에 따라 등급별 증권 보유자의 위험정도가 달라지므로, 일반 채권이 담보 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면 구조화 증권의 가치평가에는 위험 구조로 인한 위험부담까지 고려되어야 함.

● 다섯째, 일반 채권에 비해 구조화 증권은 담보자산에 대한 정보 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이 심하고 상품의 투명성이 낮은 편임.

– 증권화 과정에서 기초자산의 신용위험 정보는 신용보강 이후의 신용정보로 대체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갖는 정보 비대칭 정도가 일반 채권에 비하여 높을 수밖에 없음.

– 금융위기 당시 이러한 구조화 증권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경쟁적 증권화 과정에서 기초자산의 실질 담보여력에 비해 과도한 유동성이 창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 구조화 증권 거래에서 금융기관(자산보유자, originator), 투자목적기구(SPV),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거래 유인을 지님.

● 금융기관은 ① 보유 자산의 신용위험 감소, ② 자산의 신용위험에 적용되는 규제 자본 경감, ③ 자금조달 비용 감소, ④ 신규대출 창출을 통한 자본효율성 제고를 모색할 수 있음.

● 투자자는 구조화 증권 투자를 통해 ①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② 구조화 증권을 이용하여 다양한 차익거래 전략을 실행할 수 있으며, ③ 손쉽게 신용위험에 대한 투자할 수 있음.

● 투자목적기구(SPV)는 구조화 증권 거래에 참여함으로써 ① 높은 수수료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② 자금조달 금리와 자금운용 금리 차이만큼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음. **kiri**



## 금융상품의 이해 (18): 부채담보부증권(CDO) (3)

이경아 연구원

■ 부채담보부증권을 포괄적으로 CDO라고 지칭하며 담보자산의 종류와 구조, 운용 방식 등에 따라 CDO는 여러 종류로 구분될 수 있음.

- CDO는 담보자산이 채권(부채)인 채권담보부증권(CBO: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을 지칭하며 담보자산에 따라 CLO, SF CDO, multi-sector CDO, CDO<sup>2</sup> 등으로 구분됨.
  - 담보자산이 대출채권일 경우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자산유동화증권(ABS) · 주택저당증권(MBS) 등의 구조화 증권일 경우 SF CDO(Structured Finance CDO), 다양한 담보자산에 대해 발행될 경우 Multi-Sector CDO로 불림.
  - CDO<sup>2</sup>(CDO squared)는 CDO를 기초로 발행되는 CDO
- 또한 CDO는 발행구조, 운용방식 등 거래조건에 따라 다양한 CDO로 구분됨.

■ 담보자산의 편입 및 운용의 유연성 정도에 따라 Static CDO와 Managed CDO로 구분됨.

- Static CDO는 발행당시의 담보자산 구성이 고정적으로 유지되는 방식인 반면, Managed CDO는 담보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형태의 CDO임.
  - Static CDO 투자자는 담보자산의 구성에 대해 투자시점의 담보자산 포트폴리오대로 유지될 것을 알고 있으므로 담보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해서만 노출되게 됨.
  - Managed CDO 투자자는 투자시점의 담보자산 포트폴리오와 CDO 운용사 정보, 최소 투자제한 규정만을 알 수 있을 뿐 투자시점 이후의 포트폴리오 변화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므로, 담보자산 신용위험과 더불어 운용 위험에도 노출되게 됨.
  - 대부분의 CDO는 Managed CDO 형태로 발행되는데, 이 경우 투자자들은 운용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함.

## ■ 원리금 지급 방식에 따라 Cash Flow CDO와 Market Value CDO로 구분

- Cash Flow CDO는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담보자산으로 유입되는 현금으로 조달하는 방식인 반면, Market Value CDO는 원리금 지급의 재원을 담보자산 매각을 통해 조달함.
  - Cash Flow CDO의 담보자산은 주로 주기적인 현금흐름을 갖는 주택저당증권 등으로 구성됨.
  - Market Value CDO의 원리금 지급은 담보자산의 시장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담보자산의 시장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 최하위 트렌치(trench)인 Equity 투자자는 원리금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됨.

## ■ 금융기관의 거래 목적에 따라 Balance sheet CDO와 Arbitrage CDO로 구분

- 금융기관의 CDO 발행 동기는 크게 신용위험을 갖고 있는 자산규모를 감소시켜 규제자본을 경감하는 것과 신용보강을 통해 대출자산에 필요한 자본조달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구분됨.
  - Balance sheet CDO는 신용위험 자산에 적용되는 규제자본 경감목적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감소시키려는 유인에서 발행됨.
  - Arbitrage CDO는 담보자산을 위험등급별(trenching and repackaging)로 구분하고 증권화함으로써 자본조달비용을 절감하고, CDO 발행자금을 신규대출에 운용하여 자본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발행됨.

## ■ 담보자산의 실질적인 보유 여부(위험전이 형태)에 따라 Cash CDO와 Synthetic CDO로 구분

- Cash CDO는 자산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실제 매각을 통해 SPV에 위험을 전가
- Synthetic CDO는 자산보유자가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서 신용위험만을 SPV에 이전하는데, 이 경우 자산보유자는 특정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유동화회사로부터 보전받는 내용의 CDS(Credit Default Swap)를 체결하여 신용위험을 이전할 수 있음.
  - SPV가 자산보유자에게 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보장을 매도(CDS 발행)하고, CDS 프리미엄을 자산보유자가 SPV에게 지불함.
  - Synthetic CDO 발행자금은 신탁(trustee)기관을 통해 다른 자산(High Quality Asset)에 투자되며, 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SPV로 유입되고 SPV는 이 현금흐름과 자산보유자가 지불하는 CDS 프리미엄으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 ki



## 금융상품의 이해 (19): 부채담보부증권(CDO) (4)

이경아 연구원

- CDO 신용등급 산정(CDO 가치평가)은 유동화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의 포트폴리오 특성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요 평가항목은 ① 기초자산의 부도확률(individual default probabilities), ② 구성자산 간 부도상관관계(default correlation)임.
- 기초자산의 부도확률은 CDO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부채)의 예상부도율을 가리키며, 신용평가기관(rating agency)별로 자체적인 준거부도율(reference default probability)을 적용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준거부도율과 신용등급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음.
    - 부도율은 신용등급이 낮고, 경과기간이 길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 투자등급인 BBB- 채권의 부도율과 투기등급인 BB+ 채권의 부도율은 2배 이상의 차이가 있음.
    - 투자등급의 한계부도율이 기간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반면, 투기등급의 한계부도율은 기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띤.
- CDO 구성자산 간 부도상관관계가 낮다면 포트폴리오 위험분산효과(diversification effect)는 커지게 되며, 이는 CDO 신용등급 산정 및 투자성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침.
  - 따라서 부도상관계수에 대한 가정은 CDO 신용등급 산정에 매우 중요한 평가항목이 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CDO 투자성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침.
    - 부도상관계수의 크기가 작을수록 CDO 위험분산효과가 커지는 것은 분산투자 시 자산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작을 경우 포트폴리오 투자성가가 증가하는 것과 같은 원리임.
    - 구성자산 간 부도상관계수를 근거로 결합부도확률(joint default probability)이 산정되며, 이를 근거로 CDO의 신용등급이 결정됨.

■ 부도상관계수는 전체 CDO의 투자성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위험등급(tranch)별 투자자의 개별 투자성과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침.

- CDO를 구성하는 자산들 간의 부도상관계수가 작을수록 선순위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부도상관계수가 클수록 후순위채권자(equity tranche)에게 불리하게 작용함.
- 부도상관계수가 클 경우 구성 자산이 동시에 부도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해 선순위와 중순위채권자(senior·mezzanine)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
  - 부도상관계수가 클 경우 모든 자산의 동시 부도가능성이 증가하며, 부도확률이 가장 높은 자산의 부도사건 발생이 포트폴리오 내 모든 자산의 부도를 수반하여 선순위투자자 역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부도상관계수가 작은 자산들로 구성된 CDO 성과의 변동성은 작는데, 이로 인해 극단적인 부도사건 발생 시 손실이 발생하는 선순위채권자의 이익가능성은 높아지고 후순위채권자의 이익가능성은 낮아지게 됨.
  - 개념적으로 ‘부도상관계수 = 0’일 경우 후순위채권자의 부도확률은 구성자산들의 부도확률을 모두 더한 값에 수렴하게 됨.
- 따라서 선순위투자자일수록 낮은 부도상관계수를 선호하고 후순위투자자일수록 높은 부도상관계수를 선호함.

■ 부도상관계수는 특정기간 동안 두 기업의 부도사건 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 첫째, 일반적으로 부도상관계수는 자산상관계수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짐.
- 둘째, 개별 부도확률이 주어졌을 때 구성자산 간 자산상관계수가 높을수록 부도상관계수는 커짐.
  - 동일 업종 내 부도상관계수는 다른 업종 간 부도상관계수보다 큼.
- 셋째, 구성자산의 신용도가 좋을수록 부도상관계수가 작음.
  - 기업자체의 신용도가 좋을수록 다른 기업의 부도에 의한 영향력이 적음. **키리**



## 금융상품의 이해 (20): 목표기간펀드(TDF) (1)

이경아 연구원

■ 목표기간펀드(Target Date Fund)는 정해진 목표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안전 자산의 비중을 늘려 자산축적 기간 동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지칭<sup>1)</sup>

● 퇴직연금과 같은 장기 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자산축적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을 헤지할 수 있도록 목표기간별로 자산배분 비중이 달라지는 펀드

– 목표기간별 자산배분은 자산비중조절계획(glide path)에 따라 투자 초기에는 위험자산 비중을 높게 유지하다 목표시점(Target Date)이 가까워질수록 투자자산 비중을 보수적으로 조정해나가는 방식임(<그림 1> 참조).

● 목표기간별 자산배분은 위험허용한도(risk tolerance)가 아닌 위험감내도(risk capacity)에 의해 결정됨.<sup>2)</sup>

– 일반 혼합형 펀드의 경우 주식투자 비중이 투자자의 허용가능 위험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달리 목표기간펀드의 자산배분은 예상 은퇴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최소목표수익률(target return) 달성을 위해 투자자가 감내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이루어짐.

■ 미국에서 목표기간펀드는 연금보호법(2006년)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의 적격기본투자상품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401(k) 내 주요한 투자방식으로 성장하였음.

● 적격기본투자상품(QDIA: Qualified Default Investment Alternative)이란 미국 노동부에서 퇴직연금 투자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상품으로, 투자상품을 지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본형 퇴직연금 운영방식임.

– 지정 이후 미국 401(k) 내 목표기간 펀드 선택비율은 크게 증가하여왔음(<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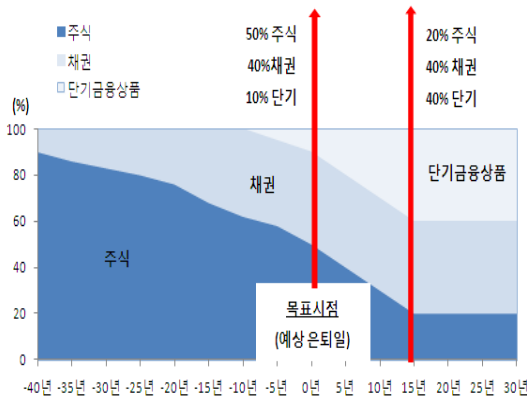
1) 이경아(2012, 7. 9), 「생애자산배분 측면에서 목표기간펀드 확산이 주는 시사점」, Kiri Weekly 제190호, 보험연구원 참고.

2) 위험허용한도(risk tolerance)는 투자자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위험수용성향(willingness to take risk)을, 그리고 위험감내도(risk capacity)는 포트폴리오 성과에 따른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위험감수능력(ability to take risk)을 지칭함.

■ 목표기간펀드는 ① 잔존만기별로 자산배분을 다르게 하며, ② 초기에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보수적으로 운용하며, ③ 자산비중조절계획(glide path)에 따라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 관리를 실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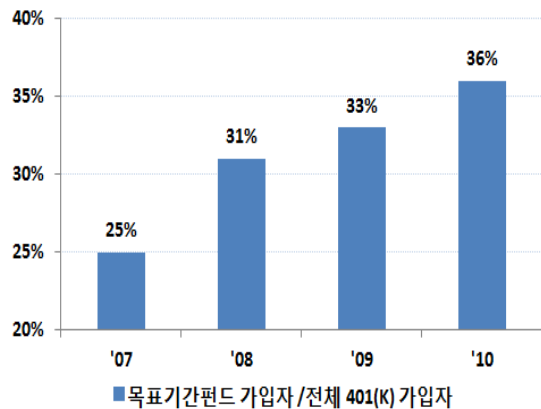
- 자산비중조절계획은 동일한 투자기간(은퇴준비 기간)을 갖는 투자자의 경우 보편적으로 동질적인 투자성향을 갖는다고 가정
  - 투자기간이 동일하더라도 실제 개인별 투자성향은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단순히 목표기간별로 동일한 자산배분을 적용(pooling of investors)하는 것은 불완전한 방법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관련 지식수준이 낮은 다수의 가입자에게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자산배분 관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목표기간펀드는 효용성이 있음.
  - 특히 투자관련 지식수준이 낮아서 부적절한 위험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금융자산 규모가 작아 맞춤형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젊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적합한 투자방식임.
  - 실제로 401(k) 내 목표기간펀드 가입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입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투자기간이 2.5년, 근속년수가 3.5년 짧았으며, 소득과 금융자산이 각각 11,000 달러, 25,000 달러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sup>3)</sup> KIRI

〈그림 1〉 자산비중조절계획(glide path) 예시



자료: ICI(2009), Principles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arget Date Funds,

〈그림 2〉 401(k) 전체 가입자 중 목표기간펀드 선택비율



자료: EBRI(2011), Target-Date Fund Use Grows in 401(k) plans,

3) EBRI (2011), Target-Date Fund Use Grows in 401(k) Plans,



## 금융상품의 이해 (21): 목표기간펀드(TDF) (2)

이경아 연구원

■ 목표기간펀드(Target Date Fund)는 행동재무학적 요인으로 인한 투자자 편향(biases from behavioral factors)을 개선하고 이를 자산배분에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운용방식임.<sup>1)</sup>

● 401(k)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투자자들은 행동재무학적 편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전통적인 재무관리는 투자자가 위험회피적(risk averse)이며, 모든 가용 정보를 분석해 합리적 투자 의사결정(rational expectation)<sup>2)</sup>을 내리고, 포트폴리오 구성 시 자산 간 상관관계(asset integration)를 고려한 효용극대화(utility maximization)를 추구한다고 가정함.
- 반면, 행동재무학적 관점에서 투자자는 손실회피적(loss averse)이며, 주어진 정보에 대해 편향된 투자 의사결정(biased expectation)을 내리고, 자산 간 상관관계를 고려하기 보다는 자금의 적립 목적에 따라 자산을 편입(asset segregation)하여 효용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적정 수준의 만족(satisfaction)을 얻으려 한다고 가정함.

■ 401(k) 가입자들은 현상유지편향(status quo bias)을 나타내었음.

- 현상유지편향이란 투자자가 최초의 선택을 바꾸는 대신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으로 적절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뜻함.
- 현상유지편향으로 적절한 자산재배분(reallocation)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목적에 부적합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게 됨.
  - 401(k) 가입자들은 가입 후 시간이 지나도 최초 자산배분을 상당부분 유지하였으며, 다른 투자안과의 비교나 추가적인 투자정보 탐색을 거치지 않고 퇴직연금 사용자(pension sponsor)가 제시하는 기본 투자안(default option)을 그대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음.

1) Kaplan(2012), Behavioral Finance and Private Wealth Management.

2) 합리적 기대가설(rational expectation hypothesis)에서는 투자자가 투자 시점의 최선의 정보를 반영하여 편중되지 않는(unbiased toward new information) 투자의사결정을 내린다고 봄.

■ 401(k) 가입자들은 후회회피편향(regret aversion bias)과 과신편향(overconfidence bias)을 보였음.

- 후회회피편향이란 잘못된 결정으로 후회할 것이 두려워 반대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을 뜻함.
- 후회회피편향을 갖는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목적에 맞추어 합리적 투자의사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따라하는 군집투자(herding investment) 경향을 보임.
  - 401(k) 가입자들은 퇴직연금 계정 내 일반적으로 3~5개의 하부 펀드를 선택하고, 선택된 펀드에 대해서 동일 투자비중(equally weighted sub-funds)을 유지하였으며, 다양한 혼합형 펀드가 투자대안으로 제시되었음에도 주식/채권 간 자산배분을 50/50으로 유지하였음.
- 과신편향이란 자신의 투자 지식·직관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으로 부적절한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뜻함.
- 과신편향이 존재할 경우 위험은 과소평가하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익을 기대하거나 편중된 투자포트폴리오(under-diversified portfolio)를 유지할 수 있음.
  - 401(k) 가입자들은 자신이 속한 회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성과보상 등으로 받은 자사주 등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유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과도한 해당 주식 투자비중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목표기간펀드는 투자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투자자 편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자동자산배분방식임.

- 따라서 펀드가입 이후에는 투자자가 투자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고 운용회사가 투자자 나이와 목표시점(은퇴시점)까지의 잔여 투자기간을 고려하여 자동적으로 자산을 배분
- 목표기간펀드를 선택함으로써 가입자들은 부적절한 투자위험이나 자산배분을 개선할 수 있음.

kiri



# 금융보험 해설 / 손해보험의 이해

- |                                     |     |
|-------------------------------------|-----|
| 1. 손해보험의 이해 (15): 정책성보험의 개념 및 종류    | 김동경 |
| 2. 손해보험의 이해 (16): 정책성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 김동경 |
| 3. 손해보험의 이해 (17): 정책성보험 - 풍수해보험     | 김동경 |
| 4. 손해보험의 이해 (18): 정책성보험 - 가축재해보험    | 김동경 |
| 5. 손해보험의 이해 (19): 정책성보험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김동경 |





## 손해보험의 이해 (15): 정책성보험의 개념 및 종류

김동겸 선임연구원

■ 정책성보험이란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률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으로, 법률에 의해 보험가입이 강제화되어 있는 의무보험과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임의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음.<sup>1)</sup>

- 의무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부의 보험료 지원이 없으나, 어선원재해보험은 예외적으로 보험료 중 일부가 지원됨.
- 반면, 임의보험의 경우 정부의 보험료 지원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임의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피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무상복구 피해지원제도와 연계해서 운영되고 있음.

■ 의무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대인배상 I 으로 불리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특수건물 소유자의 화재로 인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음.

■ 임의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어선재해보험 등이 있으며 이들 보험에 대한 가입은 가입자의 선택으로 이루어짐.

-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험이며, 손해보험회사는 재보험사 형태로 참여하고 있음.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와 제5조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규정하고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농협이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하여 원수보험사로 참여하고, 민영손해보험회사는 재보험사로 참여함.

1) 2008년 1월 기준으로 30여종의 정책성보험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등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
  -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에서 전체 사업을 관장하고 있으며, 동부화재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2006년 5월 16일부터 전국 9개 시군지역<sup>2)</sup>을 대상으로 판매를 개시함.
- 가축재해보험은 풍수해, 설해 등과 같은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축 및 축사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1997년부터 시행됨.
  - 보험 보장기간은 1년이며,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사고로 인한 가축 폐사 시 시가의 80~100%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키리**

〈표 1〉 정책성보험 주요 상품

| 보험상품         | 근거법률                | 가입 대상자       | 보장내용                | 소관부처  | 시행일자     |
|--------------|---------------------|--------------|---------------------|-------|----------|
| 농작물재해보험      | 농작물재해보험법            | 과수재배농가       |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       | 농림부   | 01.01.26 |
| 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법              | 주택 등 시설소유자   | 태풍, 홍수 등            | 소방방재청 | 06.05.15 |
| 가축재해보험       | 축산법                 | 축산농가         | 자연재해, 화재로 인한 가축피해   | 농림부   | 97.01.01 |
| 어선재해보험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장보험법     | 어선 소유        | 어선의 재물손             | 해양수산부 | 04.01.01 |
|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보유자       |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손해 | 건설교통부 | 63.04.04 |
|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 | 원자력손해배상법            | 원자력사업자       | 법률상 배상책임            | 과학기술부 | 69.01.24 |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근로자 및 사용자 | 상해, 질병, 귀국비용 등      | 노동부   | 04.08.16 |
|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연구기관의 장      | 연구활동 중 상해사고         | 과학기술부 | 06.04.01 |

자료: 1) 금융감독원(2006), 「손해보험회사의 정부추진 정책성보험 참여현황」.  
 2) 이동우(2008), 「정책성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언」.

2) 9개 시·이 지역은 충북 영동, 충남 부여, 전북 완주, 경남 창녕, 제주 서귀포, 경기 이천, 강원 화천, 경북 예천, 전남 곡성 임. 한편, 2008년에는 가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2012년 현재 보험사업자는 기존의 동부화재에서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 등 총 4개사로 확대함.



## 손해보험의 이해 (16): 정책성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김동겸 선임연구원

■ 농작물재해보험(Crop Insurance)이란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은 농가에 보험원리를 이용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임.<sup>1)</sup>

-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하여 농민들의 안정적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 3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실시하게 됨.<sup>2)</sup>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및 제5조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산림 작물 포함) 및 농업용 시설(임업용 시설물 포함)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책성보험, 물적손해보험, 단기·소멸성 보험이라는 특징을 보임.

-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보험을 정책보험과 민영보험으로 구분해 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국가가 운영주체인 정책보험임.
  - 농작물재해보험이 정책보험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민영보험과 달리 국가가 개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워 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든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임.<sup>3)</sup>
-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생산량 감소에 대해 보상하는 물적손해보험이며, 보험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이며, 만기 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환급되지 않는 단기소멸성보험임.

■ 2012년 기준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농작물로는 본사업 16개 품목, 시범사업 24개 품목 등 총 35개이며, 대상지역은 본사업과 시범사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sup>4)</sup>

1) 농작물재해보험의 근거법령으로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보험가입자), 제8조(보험사업자), 제19조(재정지원), 제20조(재보험사업)를 들 수 있음.

2) 최근 3년 동안 재해보험가입률(=보험가입면적/대상면적×100) 추이를 보면, 36.0%(2010년), 40.2%(2011년), 45.1%(2012년)로 증가하고 있음.

3) 농가의 보험수요는 낮은 반면 공급자인 보험회사는 최소한의 비용이 확보될 때 보험상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가 농가의 부담을 지원하고 보험회사에게는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작물보험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게 됨.

- 시범사업의 경우 주산지를 중심으로 일정기간 동안 실시하며, 본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을 거친 품목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대상 재해 범위를 기준으로 특정위험방식과 종합위험방식으로 구분하며, 대상재해의 구분에 따라 보장수준(또는 인수범위)에서 차이를 보임.

- 특정위험방식의 경우 해당 품목에 가장 위험한 몇 가지 재해를 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종합위험방식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함.
- 한편, 특정위험방식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70%, 80%, 85%를 보장하며, 종합위험방식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70%를 보장함.
  - 즉, 70%형은 수확량이 평년 생산량의 70% 이하로 감소했을 경우, 그 차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30%는 농가가 부담함.<sup>5)</sup>

■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보험금에 충당되는 부분인 순보험료<sup>6)</sup>와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인 부가보험료로 구성되며, 이 중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

- 국가에서 운영비(부가보험료)의 100%, 농가부담 순보험료의 50%를 부담하고 있으며, 품목개발 및 통계관리비<sup>7)</sup>의 경우 100%를 보조하고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농협이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하여 원수보험사로 참여하고, 민영손해보험회사는 재보험사로 참여하고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은 NH생명·화재를 주관사로 하여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코리안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음.
  - 손해를 180% 이하의 통상적인 손실은 보험사업자인 농협과 민영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게 되나, 손해를 180% 이상의 거대 대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보험으로 인수 **키리**

4) 본사업 품목으로는 사과, 배, 단감, 감귤, 뽕은감, 참다래, 자두, 밤, 콩, 감자, 양파,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등 총 16개 품목이 있으며, 시범사업 품목으로는 고추, 복숭아, 포도, 대추,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복분자,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인삼, 오디, 차, 파프리카, 멜론,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상추, 부추, 시금치 등 총 24개 품목이 있음.

5) 보험가입금액의 30%, 20%, 15%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하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6)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손해조사비를 일컫음.

7) 보험품목 및 대상재해를 확대하기 위한 통계자료 축적, 손해평가방법 개발 등 보험기반 구축을 위한 비용을 의미함.

〈그림 1〉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운영체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3), 2013년도 농어업재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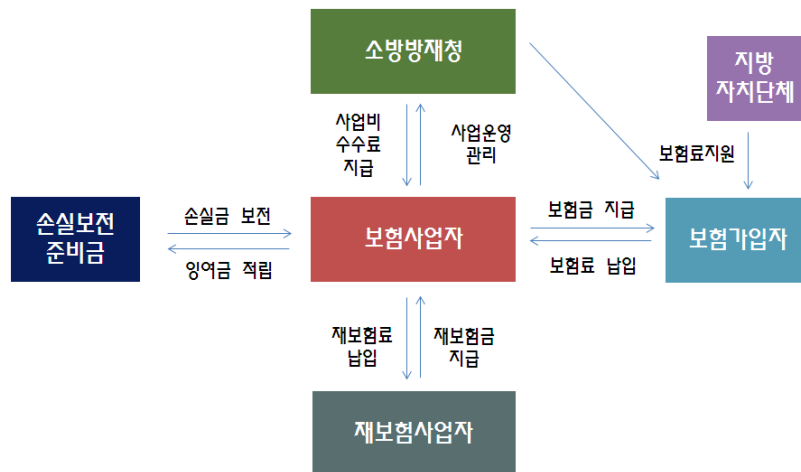
## 손해보험의 이해 (17): 정책성보험 - 풍수해보험

김동겸 선임연구원

■ 풍수해보험(Storm and Flood Insurance)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부터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에 발생하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임.<sup>1)</sup>

- 풍수해보험제도는 2006년 3월 풍수해보험법을 제정·공포하고 2006년 5월부터 전국 9개 지역<sup>2)</sup>에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함.
- 풍수해보험사업의 경우 민영 손해보험회사가 사업주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은 사업을 관장하면서 국고와 지방비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구조임.

〈그림 1〉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체계



자료: 소방방재청(2011), 2011년도 풍수해보험실무.

1) 풍수해보험 운영의 근거법령으로는 풍수해보험법(보험가입자), 제8조(보험사업자), 제19조(재정지원), 제20조(재보험사업)를 들 수 있음.

2) 경기 이천, 강원 화천, 충북 영동, 충남 부여, 전북 완주, 전남 곡성, 경북 예천, 경남 창녕, 제주 서귀포.

- 2013년 기준으로 풍수해보험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로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 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이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등 책임의 일부를 전가하기 위해 민영보험사를 통한 민영재보험을 활용하여 일차적으로 보험리스크를 분산시킴.<sup>3)</sup>
- 풍수해의 경우 연도별로 발생편차가 커서 보험리스크를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함.<sup>4)</sup>
  - 풍수해보험법 제20조에 따라 풍수해보험에 참여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재정의 안정 등 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손실보전 준비금을 적립하여야함.

■ 풍수해보험의 보험료는 지역별 피해율, 구조물 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형태임.

- 풍수해보험의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영업보험료<sup>5)</sup>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개인은 38~45%를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sup>6)</sup>
  - 위험보험료에 대해서는 가입금액에 따라 28~35%를 보조해 주고 있으며, 부가보험료에 대해서는 90%를 정부가 지원함.
-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50%, 70%, 90% 중 보험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음.

■ 풍수해보험상품은 주택과 온실로 구분이 되며, 민영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풍수해보험 I, 풍수해보험 II(단체가입상품), 풍수해보험 III(공동주택 실손형 상품) 등이 있음.

- 풍수해보험 상품 I 은 동산을 포함한 주택, 온실에 대한 정액 보상형 보험 상품으로 개별적으로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상품임.
- 풍수해보험 상품 II 는 동산을 포함한 주택에 대한 정액 보상형 상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단체가입할 경우 주민부담 보험료의 10% 할인 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임.
- 풍수해보험 상품 III 은 주택 중 공동주택<sup>7)</sup>에 한해 실손 보상형으로 판매되는 보험상품임. **키리**

3) 농작물재해보험에서와 같이 손해를 180% 이하의 통상적인 손실은 보험사업자인 민영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나, 손해를 180% 이상의 거대 재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비로 보전해줌.

4) 손실보전준비금이란 예측하지 못한 거대위험에 대한 미래의 보험금 지급액에 대비하기 위해 결산상 잉여금을 주재원으로 조성하는 적립액으로, 결산상 손실액이 발생할 때 원칙적으로 손실보전준비금 등으로 충당하고 재원부족 시 재해대책 예비비 등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5) 영업보험료란 총보험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됨.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86.5%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음.

7)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의미함.



## 손해보험의 이해 (18): 정책성보험 - 가축재해보험

김동겸 선임연구원

■ 가축재해보험이란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해 가축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축산농가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를 통해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고 민영보험회사가 참여하는 정책성 보험임.

● 정부는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축 피해에 대비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장치 마련을 위해 1997년 가축공제를 도입하였으며,<sup>1)</sup>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시행된 2010년부터 가축재해보험을 농작물재해보험과 함께 농업재해보험으로 통합하여 운영함.

– 가축재해보험 운영의 근거법령인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sup>2)</sup>의 종류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을 들고 있음.

■ 2013년 기준으로 가축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축종은 총 15축종이며,<sup>3)</sup> 지역별로는 전국을 가축재해보험의 운영 대상으로 함.

● 가축재해보험이 도입된 1997년부터 3개년 동안은 “소”에 대해서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0년부터 대상 축종을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함.<sup>4)</sup>

● 한편, 가축재해보험에서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을 보험대상 재해범위로 삼고 있음.

– 소나 말과 같은 대가축의 경우는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대부분의 위험을 보장하고 있으며, 돼지, 가금 등 중·소 가축은 화재나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위주로 위험을 보장함.

1) 정부는 1997년부터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에 의거하여 가축공제(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또는 축산인 관련 법인에 대해 공제료의 일부를 보조하게 되었으나, 2010년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보험가입자), 제8조(보험사업자), 제19조(재정지원)에 의거하여 가축재해보험사업을 운영되게 됨.

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작물·양식수산물·가축 및 농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질병 또는 화재 등과 같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임.

3) 2013년 기준으로 가축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축종은 본사업 14축종(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벌, 토끼), 시범사업 2축종(관상조, 오소리) 등 총 16축종임.

4) (1997~1999년) 소 → (2000년) 말, 돼지 → (2002년) 닭 → (2004년) 오리 → (2005년) 꿩, 메추리 등과 같이 보험의 목적물을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대상은 가축재해보험 사업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이며, 정부에서는 가축재해보험 활성화 및 양축농가 부담경감을 위해 납입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보조지원하고 있음.

- 다만,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축산법 제22조 제1항 (축산업의 허가 등)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 대상 농가 중 미등록 농가는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최근 3년 동안 가축보험가입률<sup>5)</sup> 추이를 보게 되면, 52.1%(2010년), 54.1%(2011년), 68.9%(2012년)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sup>6)</sup>

■ 정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축재해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농업인이 납부하는 총보험료의 50%를 보조하고 있으며, 보험사고 발생 시 각 축종별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시가의 80~100%까지 보험금이 지급됨.

- 정부에서는 말에 대해 마리당 가입금액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지만,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
- 한편, 소의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의 80%까지를 보상하고 있으며, 돼지의 경우 가입금액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95~100% 또는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장함.<sup>7)</sup>

■ 2013년 현재 NH농협손해보험과 LIG컨소시엄(LIG손해보험, 현대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이 가축재해보험의 사업대상자 즉, 재해보험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음.

- 1997년 가축공제 시범사업이 도입될 당시에는 (구)축협중앙회만이 사업운영자로 참여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가축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2007년부터 6월부터 민영보험사가 가축재해보험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함.
-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서비스 확대, 상품 다양화, 보험요율 인하 등을 통해 가축보험을 활성화 시킬 것을 목표로 함. Kiri

5) 가축보험가입률 = 보험가입두수 / 보험가입대상 가축두수

6) 농림수산식품부 재해보험팀(2013), 2013년도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7) 농협손해보험(주)의 가축재해보험상품 기준임.



## 손해보험의 이해 (19): 정책성보험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김동겸 선임연구원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란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양식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식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임.

● 정부는 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2007년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을 제정하였으며,<sup>1)</sup>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시행된 2010년부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과 함께 농어업재해보험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됨.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운영의 근거법령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의 종류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으로 명시하고 있음.

〈표 1〉 농어업재해보험의 종류

| 구분           | 농작물재해보험                                             | 가축재해보험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
|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                                               |                                                             |
| 보험대상물        | 농작물(산림작물 포함) 및 시설물<br>(40개 품목)                      | 가축 16축종                                       | 양식수산물 및 시설물<br>(15개 품목)                                     |
| 보험대상<br>재해범위 |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피해 등                                 |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화재,<br>질병 등                  | 태풍, 해일, 풍랑, 적조, 호우,<br>홍수, 대설, 동해, 낙뢰, 이상조류<br>및 이에 의한 수산질병 |
| 보장수준         | 보험가입금액의<br>70%, 80%, 85%                            |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시가의<br>80~100%                    | 보험가액의 80% 한도 내                                              |
| 정부지원         | 보험료 50%, 운영비 100%                                   | 보험료 50%, 운영비 50%                              | 보험료 50%, 운영비 100%                                           |
| 보험사업자        | NH생명·손해, 삼성화재,<br>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br>메리츠화재, 코리안리 | NH손해,<br>LIG 컨소시엄(삼성화재,<br>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 | 수협중앙회                                                       |
| 제도도입         | 2001                                                | 1997                                          | 2008                                                        |

자료: 김학용(2011), 『2011년 국정감사 정책제안 I -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및 개선방안』.

1) 2008년 7월 육상수조식 넓치 품목에 대한 상품이 출시되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기 시작함.

■ 2013년 기준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총 15품목이며,<sup>2)</sup> 지역별로는 전국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운영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도입된 2008년부터 2개년 동안은 “넙치”에 대해서만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전복(2010년), 조피볼락, 굴, 김(2011년) 등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함.
- 한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는 태풍, 해일, 풍랑, 적조, 호우, 홍수, 대설, 동해, 낙뢰, 이상조류 및 이에 의한 수산질병 등을 보험대상 재해범위로 삼고 있음.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사업대상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양식어업인 및 양식업 관련 어업법인이며, 정부에서는 양식어가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순보험료의 50%와 운영비의 100%를 국고에서 보조지원하고 있음.

■ 최근 3년 동안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sup>3)</sup> 추이를 보게 되면, 22.1%(2010년), 33.0%(2011년), 43.1%(2012년)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sup>4)</sup>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위험은 국가가 인수하는 국가재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자원 조달을 위해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을 설치함.<sup>5)</sup>

- 국가재보험제도는 수협중앙회가 원보험사업자로, 민영보험사가 재보험사업자로 참여하고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가 위험을 부담하는 모형임.
  - 손해율 140% 이하의 손해(통상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업자가 인수하고, 민영보험사와의 재보험약정에 의해 20%를 보험사업자가 보유하며, 손해율 140%를 초과하는 손해(거대재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가재보험으로 인수함.
-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은 거대재해로 손해율이 급증할 경우 국가가 위험의 일부를 분담하기 위해 2005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일정기준의 손해율을 정하고 손해율이 사전에 약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보험기금을 통해 재보험금을 지급함. **키리**

2) 2013년 기준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 대상물로는 본사업의 경우 육상수조식 넙치가 있으며, 시범사업으로는 해상가두리 전복,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연승수하식 굴, 부류식·지주식 김, 송어, 우렁쟁이, 미역, 뽕장어 등이 있음.

3) 가축보험가입률 = (보험가입어가 수 / 보험가입대상어가 수) × 100

4) 농림수산식품부 재해보험팀(2013), 2013년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5) 2008년 도입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경우 국가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자원 조달을 위해 2009년부터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기금”을 설치하였으나,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제정된 2010년 이후 농어업재해보험기금으로 통합 운영됨.



# 금융보험 해설 / 연금제도의 국제 비교

- |                                       |     |
|---------------------------------------|-----|
| 1. 연금제도의 국제 비교 (1): 연금제도의 체계 및 유형     | 김동겸 |
| 2. 연금제도의 국제 비교 (2): 최저소득보장제도          | 김동겸 |
| 3. 연금제도의 국제 비교 (3): 연금제도의 모수 - 연금수급연령 | 김동겸 |
| 4. 연금제도의 국제 비교 (4): 연금제도의 모수 - 보험요율   | 김동겸 |
| 5. 연금제도의 국제 비교 (5): 연금제도의 모수 - 적립률    | 김동겸 |





## 연금제도의 국제 비교 (1): 연금제도의 체계 및 유형

김동겸 선임연구원

■ 노후소득보장제도는 퇴직 이후의 소득상실 위험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그 대표적인 예가 연금제도(Pension Plan)임.<sup>1)</sup>

● 연금제도는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볼 때, 국가 차원의 공적연금, 기업 차원의 퇴직연금, 개인 차원의 개인연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이 중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이 주체가 되어 설립·운영하는 제도로, 기업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자가 고용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퇴직 후에 급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계약을 의미함.

■ 각 국가마다 상이한 성격을 가진 노후소득보장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 연금제도를 분류하는데 제약이 존재하나, World Bank나 OECD 등을 중심으로 각국의 연금제도를 유형화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음.

● World Bank(2004)<sup>2)</sup>와 Hozmann and Hinz(2005)<sup>3)</sup>는 연금제도가 여러 개의 주(主, pillar)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Gillion et al.(2000)<sup>4)</sup>이나 OECD(2005)<sup>5)</sup> 등에서는 연금제도가 다층(multi-tier)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음.

– World Bank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일주(first pillar)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노인 빈곤 축소를 목표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를, 이주(second pillar)는 사적으로 관리되는 강제 저축제도를, 삼주(third pillar)는 개인연금 등과 같은 개인의 자발적 저축을 의미함.

1) “pension plan”이란 용어는 retirement income plan, pension arrangement, pension scheme, pension system, pension provision 등의 용어로 사용되기도 함.

2) World Bank(1994), Averting the Old-Age Crisis: Policies to Protect the Old and Promote Growth,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3) Holzmann, R. and R. Hinz(2005), “Old-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ur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Pension Systems and Reform”, World Bank, Washington, 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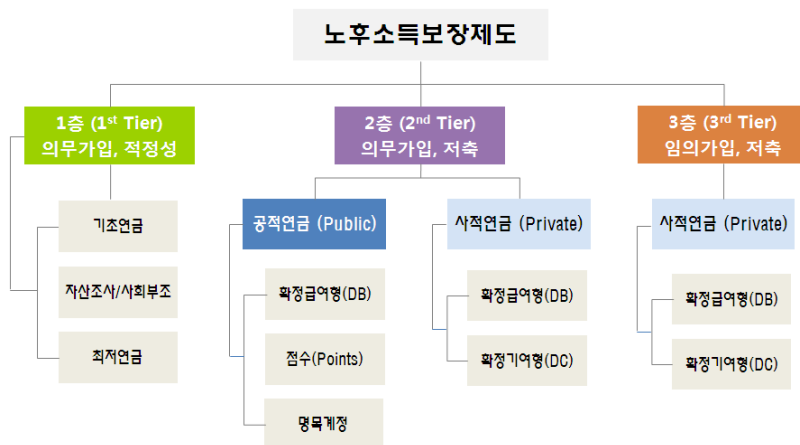
4) Gillion, C., T. Turner, C. Bailey, D. Latulippe, (2000), Social Security Pensions: Development and Reform.

5) OECD(2005), Pensions at a Glance.

■ 한편, OECD에는 총 3개의 층(tier)으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분류하고 있음.

- OECD에서는 연금제도가 법적으로 강제화 될 경우 그 운영주체(정부 또는 민간)에 관계없이 법정 제도(mandatory scheme)로 분류하고 있으며, 법정제도는 소득재분배(redistributive) 기능을 가진 1층과 저축(savings)<sup>6)</sup>의 역할을 담당하는 2층으로 구분할 수 있음.<sup>7)</sup>
- 한편, 3층의 임의제도(voluntary scheme)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은 연금제도로서, 운영주체에 따라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되며 급여결정방식을 기준으로는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구분됨.
  - 확정기여형은 기여수준 및 적립금의 운영과 급여가 연동되어 있는 방식인 반면, 확정급여형은 근로기간 중에 납부한 기여수준이나 적립금을 운영결과가 연계되어 있지 않고 근로기간과 근로기간 중의 소득에 기초하여 일정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는 방식임.

〈그림 1〉 노후소득보장제도(연금제도)의 분류 체계



자료: OECD(2011), Pensions at a Glance; OECD(2004), Private Pensions OECD Classification and Glossary.

■ 노후소득보장체계 중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1층(first tier)을 구성하고 있는 연금제도로는 기초연금, 자산조사, 최저연금 등이 있음.

- 기초연금(basic pension)이란 과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요건(거주 및 기여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모든 노인층에게 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소득재분배기능을 담당

6) OECD(2011)는 공적연금제도의 기능을 소득재분배(1층)와 저축기능(2층)으로 보고 있으며, OECD(2005, 2007)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기능을 소득재분배(1층)와 보험기능(2층)으로 분류하고 있음.

7)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부분은 절대액의 기초소득보장을, 보험부분은 적정소득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자산조사(resource-tested or targeted plans)는 자산이나 소득조사를 기초로 최저한도의 소득을 제공하는 공적부조제도를 의미하며, 최저연금(minimum pensions)은 노인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해 주는 연금제도를 의미함.

■ 2층의 저축부분은 은퇴 이후에도 근로기간 동안의 소득 및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비례연금제도로, 제공자에 따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급여형태에 따라서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점수제도(Points Scheme), 명목계정(NDC: Notional Account)<sup>8)</sup>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sup>9)</sup> ki리

〈표 1〉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제도

| 국가    | 1층(재분배기능) |          |          | 2층(보험기능)  |      | 국가    | 1층(재분배기능) |          |          | 2층(보험기능) |      |
|-------|-----------|----------|----------|-----------|------|-------|-----------|----------|----------|----------|------|
|       | 공적연금      |          |          | 공적연금      | 사적연금 |       | 공적연금      |          |          | 공적연금     | 사적연금 |
|       | 자산<br>조사  | 기초<br>연금 | 최저<br>연금 | 유형        | 유형   |       | 자산<br>조사  | 기초<br>연금 | 최저<br>연금 | 유형       | 유형   |
| 호주    | ●         |          |          |           | DC   | 일본    |           | ●        |          | DB       |      |
| 오스트리아 |           |          |          | DB        |      | 한국    | ●         | ●        |          | DB       |      |
| 벨기에   | ●         |          | ●        | DB        |      | 룩셈부르크 | ●         | ●        | ●        | DB       |      |
| 캐나다   | ●         | ●        |          | DB        |      | 멕시코   |           |          | ●        |          | DC   |
| 칠레    | ●         |          | ●        |           | DC   | 네덜란드  |           | ●        |          |          | DB   |
| 체코    |           | ●        | ●        | DB        |      | 뉴질랜드  |           | ●        |          |          |      |
| 덴마크   | ●         | ●        |          |           | DC   | 노르웨이  |           |          | ●        | NDC      | DC   |
| 에스토니아 |           | ●        |          | Points    | DC   | 폴란드   |           |          | ●        | NDC      | DC   |
| 핀란드   |           |          | ●        | DB        |      | 포르투갈  |           |          | ●        | DB       |      |
| 프랑스   |           |          | ●        | DB+Points |      | 슬로바키아 |           |          | ●        | Points   | DC   |
| 독일    | ●         |          |          | Points    |      | 슬로베니아 |           |          | ●        | DB       |      |
| 그리스   |           |          | ●        | DB        |      | 스페인   |           |          | ●        | DB       |      |
| 헝가리   |           |          |          | DB        | DC   | 스웨덴   |           |          | ●        | NDC      | DC   |
| 아이슬란드 | ●         | ●        |          |           | DB   | 스위스   | ●         |          | ●        | DB       | DB   |
| 아일랜드  |           | ●        |          |           |      | 터키    |           |          | ●        | DB       |      |
| 이스라엘  |           | ●        |          |           | DC   | 영국    | ●         | ●        | ●        | DB       |      |
| 이탈리아  | ●         |          |          | NDC       |      | 미국    |           |          |          | DB       |      |

자료: OECD(2011), Pensions at a Glance 2011.

8) 점수제도란 매년 근로자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점수(pension point)를 획득 한 후 은퇴 시 누적연금점수에 연금점수의 가치를 곱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탈리아, 스웨덴 등의 공적연금제도인 명목계정은 개인별 연금계정에 각 근로자의 기여액을 기록하고 소정의 수익률을 적용해 주는 방식임.

9) 한편, 연금제도는 재원조달방식을 기준으로는 부과방식(Pay As You Go)과 적립방식(Funded)으로도 구분할 수도 있음. 부과방식은 현재 근로자가 지불한 기여금이 현재 퇴직자의 급여로 지출되는 방식이며, 적립방식은 근로자가 자신의 계정에 자신의 기여금을 예치하고 그 금액이 투자되어 자신의 퇴직 급여에 이용되는 방식임.



## 연금제도의 국제 비교 (2): 최저소득보장제도

김동겸 선임연구원

■ 연금제도의 목적 중 하나는 각 개인이 노년층에 접어들었을 때 빈곤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이며,<sup>1)</sup> 최저소득보장제도(minimum income guarantee or minimum income protection)는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sup>2)</sup>

● 최저소득보장제도는 생애근로 기간 중 저임금·비정규직 근로자였던 경제주체들이 노년층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빈곤문제를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됨.

■ OECD(2011)에서는 노인빈곤 방지를 목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국의 최저소득보장제도를 목표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 최저연금제도 등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음.<sup>3)</sup>

● 첫째, 목표연금제도(targeted plan) 또는 자산조사제도(resource-tested)는 자산이나 소득조사를 기초로 최저한도의 소득을 제공하는 사회부조제도(social assistance)임.

● 둘째, 기초연금제도(basic schemes)는 과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임.

– 캐나다, 체코,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등 OECD 회원국 중 총 13개 국가에서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셋째, 최저연금제도(minimum pensions)는 연금급여가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노년층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급여를 지급함.

1) Eckardt, M.(2005), The open method of coordination on pensions: an economic analysis of its effects on pension reform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 각국에서 운영 중인 연금제도를 3층으로 분류하고 있는 OECD(2007, 2009, 2011)에서는 최저소득보장제도가 소득재분배(redistributive) 기능을 가진 1층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3) Goedem(2012)는 유럽의 최저소득보장제도를 (1) 제도에 대한 접근이 과거 기여(past contribution)와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2) 급여수준을 결정할 때 자산조사가 적용되는가에 따라 정액연금, 기초연금, 최저연금, 조건부 기초연금, 보충연금, 사회연금 등으로 분류하였음.

- 최저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웨덴, 핀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영국 등 총 18개 국가임.

■ OECD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저소득보장제도는 평균소득 대비 상대적 급여수준(relative benefit value)과 적용범위(coverage)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 OECD 회원국들의 비기여형급여(noncontributory benefit)<sup>4)</sup>와 기여형최저연금(contributory minimum pension)의 평균급여 수준은 각각 평균소득(average income)의 21.6%와 24.5% 수준임.<sup>5)</sup>
- OECD 회원국에서는 평균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1/3 이상이 최저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리스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60% 정도가 기여형 최저연금을 받고 있으며, 19%는 사회안전망 급여를 수령하고 있음. **kiri**

〈표 1〉 OECD 국가의 최저소득보장제도 현황

| 국가    | 상대적 급여수준<br>(평균소득 대비 비율) |      |      | 적용범위<br>(65세 이상<br>수령비율) |      | 국가    | 상대적 급여수준<br>(평균소득 대비 비율) |      |      | 적용범위<br>(65세 이상<br>수령비율) |      |
|-------|--------------------------|------|------|--------------------------|------|-------|--------------------------|------|------|--------------------------|------|
|       | 기초                       | 목표   | 최저   | 목표                       | 최저   |       | 기초                       | 목표   | 최저   | 목표                       | 최저   |
| 호주    |                          | 23.7 |      | 78                       |      | 일본    | 15.8                     | 19.4 |      | 2                        |      |
| 오스트리아 |                          | 26.9 |      | 11                       |      | 한국    | 7.1                      | 3.0  |      | 60                       |      |
| 벨기에   |                          | 26.5 | 28.5 | 5                        | 11   | 룩셈부르크 | 9.3                      | 28.5 | 35.6 | 1                        | 29   |
| 캐나다   | 14.2                     | 17.9 |      | 34                       |      | 멕시코   |                          |      | 28.7 |                          | N.A. |
| 칠레    |                          | 15.4 | 14.4 | 40                       |      | 네덜란드  | 29.2                     |      |      |                          |      |
| 체코    | 8.3                      | 13.7 | 11.7 | 1                        | N.A. | 뉴질랜드  | 38.7                     |      |      |                          |      |
| 덴마크   | 17.0                     | 17.1 |      | 68                       |      | 노르웨이  |                          |      | 31.4 |                          | N.A. |
| 에스토니아 | 12.4                     | 14.2 |      | 6                        |      | 폴란드   |                          | 17.0 | 22.6 | 12                       | N.A. |
| 핀란드   |                          | 18.0 |      | 2                        | 53   | 포르투갈  |                          | 13.6 | 27.1 | 17                       | 59   |
| 프랑스   |                          | 23.1 | 23.3 | 5                        | 36   | 슬로바키아 |                          | 24.7 |      | 1                        |      |
| 독일    |                          | 20.3 |      | 2                        |      | 슬로베니아 |                          | 32.1 | 13.8 | 22                       | 3    |
| 그리스   |                          | 11.5 | 28.6 | 19                       | 60   | 스페인   |                          | 17.0 | 27.4 | 7                        | 28   |
| 헝가리   |                          |      | 14.6 | <1                       | 2    | 스웨덴   |                          | 16.3 | 24.8 | 1                        | 55   |
| 아이슬란드 | 7.6                      | 23.9 |      | N.A.                     |      | 스위스   |                          | 24.4 | 17.8 | 12                       | N.A. |
| 아일랜드  | 29.0                     | 27.5 |      | 28                       |      | 터키    |                          | 5.9  | 38.2 | 22                       |      |
| 이스라엘  | 13.0                     | 22.6 |      | N.A.                     |      | 영국    | 14.0                     | 19.2 | 10.5 | 23                       | N.A. |
| 이탈리아  |                          | 20.2 | 19.9 | 5                        | 32   | 미국    |                          | 19.0 |      | 7                        |      |

자료: OECD(2011), Pensions at a Glance 2011.

4) 비기여형급여는 목표연금제도를 의미하며, 이는 사회안전망 급여(safety-net benefits)로 불리기도 함.

5) OECD(2011), Pensions at a Glance 2011.



## 연금제도의 국제 비교 (3): 연금제도의 모수 - 연금수급연령

김동겸 선임연구원

■ 연금제도의 모수(parameter)란 보험요율, 급여산식, 개시연령 등과 같이 연금제도와 관련된 주요 변수로, 이들 변수들은 수급자격, 기여구조, 수급구조 등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음.

● 수급자격과 관련된 변수로는 연금개시연령, 기여기간 등이 있으며, 기여구조 측면의 변수로는 연금제도의 대상범위, 보험요율 등이 있으며, 수급구조 관련 변수로는 연금액 산정방법, 최저연령, 연금과세 등이 있음.

■ 연금수급연령(pensionable age or pension eligibility ages)이란 개별 경제주체가 조기퇴직 하는 경우 급여액에 대한 감액(actuarial reduction)이 발생하지 않고 최초로 연금급여를 전액 수령할 수 있는 나이를 의미함.<sup>1)</sup>

●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상 연금수급연령(normal pension age)”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sup>2)</sup>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통상 연금수급연령이 없는 대신 연금 수령이 가능한 최소 나이의 범위를 정하기도 함.<sup>3)</sup>

● 연금수급연령은 은퇴시기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연금제도의 개혁이 시도되고 있음.

- 일부 학자들은 개별 경제주체의 조기은퇴(early retirement)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관대한 연금제도를 지목하고 있으며,<sup>4)</sup> 각국에서는 조기은퇴를 억제하기 위해 조기은퇴에 대한 벌칙부과 또는 은퇴시기 연장에 대한 혜택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1) OECD(2011), Pensions at a glance.

2) 일정한 기여요건(contribution requirements)이 충족되는 경우 연금급여가 축소되지 않고도 정년보다 빨리 퇴직하는 것이 가능함.

3) OECD(2011)에서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연금수급연령을 20세부터 계속 일한 사람이 주된 연금제도 하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연금수급권을 갖게 되는 연령으로 정의하고 있음.

4) Modigliani and Stering(1983)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은퇴행위에 사회보장제도가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Hurd(1990)은 62세에서 은퇴패턴이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의 원인으로 62세가 조기은퇴가 가능한 최초의 연령으로 해당 연령에서 사회보장자산이 상승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음.

■ 대다수 국가에서는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연금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추세이나,<sup>5)</sup> 2010년까지 남녀 모두 연금수급연령이 조정되지 않은 국가는 핀란드, 아이슬란드,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에 불과함.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헝가리, 포르투갈, 스위스에서는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이 조정된 반면, 남성의 연금수급연령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 OECD 국가 중 남성의 연금수급연령이 상향조정되고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이 조정되지 않은 국가는 폴란드가 유일함. **키리**

〈표 1〉 OECD 국가의 연금수급연령 비교

| 국가      | 남성   |      |      |      | 여성   |      |      |      | 국가    | 남성   |      |      |      | 여성   |      |      |      |
|---------|------|------|------|------|------|------|------|------|-------|------|------|------|------|------|------|------|------|
|         | 1949 | 1971 | 1989 | 2010 | 1949 | 1971 | 1989 | 2010 |       | 1949 | 1971 | 1989 | 2010 | 1949 | 1971 | 1989 | 2010 |
| 호주      | 65   | 65   | 65   | 65   | 60   | 60   | 60   | 62   | 한국    | -    | -    | -    | 60   | -    | -    | -    | 60   |
| 오스트리아   | 65   | 65   | 65   | 65   | 65   | 60   | 60   | 60   | 룩셈부르크 | 65   | 65   | 65   | 60   | 65   | 65   | 65   | 60   |
| 벨기에     | 60   | 60   | 60   | 60   | 55   | 60   | 60   | 60   | 멕시코   | -    | 65   | 65   | 65   | -    | 65   | 65   | 65   |
| 캐나다     | 70   | 68   | 66   | 65   | 70   | 68   | 66   | 65   | 네덜란드  | 65   | 65   | 65   | 65   | 65   | 65   | 65   | 65   |
| 체코      | -    | 60   | 60   | 61   | -    | 55   | 57   | 58.7 | 뉴질랜드  | 65   | 60   | 60   | 65   | 65   | 60   | 60   | 65   |
| 덴마크     | 65   | 67   | 67   | 65   | 65   | 62   | 62   | 65   | 노르웨이  | 70   | 70   | 67   | 67   | 70   | 70   | 67   | 67   |
| 핀란드     | -    | 65   | 65   | 65   | -    | 65   | 65   | 65   | 폴란드   | 60   | 60   | 65   | 65   | 60   | 60   | 60   | 60   |
| 프랑스     | -    | 65   | 60   | 60.5 | -    | 65   | 60   | 60.5 | 포르투갈  | 65   | 65   | 65   | 65   | 65   | 65   | 62   | 65   |
| 독일      | 63   | 63   | 63   | 65   | 60   | 60   | 60   | 65   | 슬로바키아 | -    | 60   | 60   | 62   | -    | 55   | 57   | 57   |
| 그리스     | 55   | 57   | 57   | 57   | 55   | 57   | 57   | 57   | 스페인   | 65   | 65   | 65   | 65   | 65   | 65   | 65   | 65   |
| 헝가리     | 60   | 60   | 60   | 60   | 55   | 55   | 55   | 59   | 스웨덴   | 67   | 67   | 65   | 65   | 67   | 67   | 65   | 65   |
| 아이슬란드   | -    | 67   | 67   | 67   |      | 67   | 67   | 67   | 스위스   | -    | 65   | 65   | 65   | -    | 60   | 62   | 63   |
| 아일랜드    | 70   | 70   | 65   | 65   | 70   | 70   | 65   | 65   | 터키    | -    | 60   | 45   | 44.9 | -    | 60   | 45   | 41   |
| 이탈리아    | 60   | 60   | 55   | 59   | 55   | 55   | 55   | 59   | 영국    | 65   | 65   | 65   | 65   | 60   | 60   | 60   | 60   |
| 일본      | -    | 60   | 60   | 64   | -    | 55   | 56   | 62   | 미국    | 65   | 65   | 65   | 66   | 65   | 65   | 65   | 66   |
| OECD 평균 | 64.3 | 63.9 | 62.8 | 63.0 | 62.9 | 62.1 | 61.1 | 61.9 |       |      |      |      |      |      |      |      |      |

주: 1) 붉은색은 남녀 간 연금수급연령이 다른 것을 의미함.

자료: Turner(2007), Social Security Pensionable Ages in OECD Countries: 1949-2035,

OECD(2011), Pensions at a Glance 2011.

5) 연금개혁(pension reform)은 크게 모수적 개혁(parametric reform)과 구조적 개혁(fundamental or structural reform)으로 구분할 수 있음. 모수적 개혁은 현재 연금제도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급여산식이나 보험요율 등 연금제도의 주요 모수를 조정하는 것이며, 구조적 개혁은 연금의 관대성 감소,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증가, 사적연금의 확대, 법정퇴직연령의 변경정책, 고용과 연금의 연계, 가계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 등을 들 수 있음.



## 연금제도의 국제 비교 (4): 연금제도의 모수 - 보험요율

김동겸 선임연구원

■ 연금제도는 기여금과 연금급여의 연관도에 따라 사회보험방식과 조세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조세방식은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며, 사회보험방식은 사회보험료 (social contribution)라는 기여금을 소득비례로 강제적으로 납부하고 기여금에 따라 급여수준이 차등화되는 형태임.
  - 대부분 사회보험방식에서는 기여금 수준에 따라 급여수준이 차등화되고 조세방식에서는 급여수준이 정액으로 균등화되어 있음.<sup>1)</sup>
- 1889년 비스마르크가 독일에 공적연금을 처음 도입할 당시 기여금을 근로자들이 부담토록 하는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영국에서는 1908년에 조세방식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후 사회보험방식으로 변경함.
  - 뉴질랜드와 호주는 도입 초기부터 기여금이 없는 조세방식을 유지하고 있음.

■ 보험요율 또는 기여율(contribution rate)은 기여금 등의 수준을 정하는 기준으로, 공적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간 중 정률 또는 정액의 기여금이나 사회보장세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해야 함.

- 기여율이 부과되는 대상소득은 취업자의 총소득 혹은 그 중 일부로 국가별, 시기별로 차이를 보임.<sup>2)</sup>
  - 에스토니아와 슬로바키아의 경우 2000년대 말 보험요율을 하향조정한 반면,<sup>3)</sup> 헝가리의 경우 보험요율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남(〈표 1〉 참조).

1) 다만 기초연금에서는 재원이 기여금이든 조세이든 정액지급이 원칙이며, 조세방식의 경우 거주기간에 따라 감액되기도 함.

2)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대부분의 근로소득이 이에 해당함. 반면, 공무원의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보수월액으로 전체 근로소득의 약 65% 정도임. 따라서 연금별 혹은 국가별 기여금부담수준을 비교할 경우 보험요율과 더불어 보험요율이 적용되는 기준소득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3) 보험요율을 낮춘 이유는 고용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세를 낮추려는 동기에서 시작한 경우가 많음.

〈표 1〉 OECD 국가의 공적연금에 대한 보험요율 및 수입

(단위: %)

| 국가      | 연금 보험요율 (총소득대비)                                    |      |      |      |      |      |      | 연금보험료 수입 (2008년 기준) |            |            |          |
|---------|----------------------------------------------------|------|------|------|------|------|------|---------------------|------------|------------|----------|
|         | 1994                                               | 1999 | 2004 | 2007 | 2009 | 2009 |      | GDP 대비              |            |            | 세금<br>대비 |
|         |                                                    |      |      |      |      | 근로자  | 고용주  | 근로자                 | 고용주        | 합계         |          |
| 호주      | 사적연금(Private pension contributions)에 대한<br>기여금만 존재 |      |      |      |      |      |      | 0.0                 | 0.0        | 0.0        | 0.0      |
| 오스트리아   | 22.8                                               | 22.8 | 22.8 | 22.8 | 22.8 | 10.3 | 12.6 | 3.5                 | 3.8        | 8.0        | 18.9     |
| 벨기에     | 16.4                                               | 16.4 | 16.4 | 16.4 | 16.4 | 7.5  | 8.9  | 2.3                 | 2.0        | 4.7        | 10.7     |
| 캐나다     | 5.2                                                | 7.0  | 9.9  | 9.9  | 9.9  | 5.0  | 5.0  | 1.3                 | 1.3        | 2.8        | 8.3      |
| 칠레      |                                                    |      | 29.8 | 29.8 | 29.8 | 28.8 | 1.0  |                     |            |            |          |
| 체코      | 26.9                                               | 26.0 | 28.0 | 32.5 | 28.0 | 6.5  | 21.5 | 1.8                 | 6.0        | 8.3        | 22.2     |
| 덴마크     | 사적연금(Private pension contributions)에 대한 기여금만<br>존재 |      |      |      |      |      |      | 0.0                 | 0.0        | 0.0        | 0.0      |
| 에스토니아   |                                                    |      | 35.0 | 22.0 | 22.0 | 2.0  | 20.0 |                     |            |            |          |
| 핀란드     | 18.6                                               | 21.5 | 21.4 | 20.9 | 21.6 | 4.5  | 17.1 | 1.6                 | 7.1        | 9.1        | 21.2     |
| 프랑스     | 21.5                                               | 16.7 | 16.7 | 16.7 | 16.7 | 6.8  | 9.9  |                     |            |            |          |
| 독일      | 19.2                                               | 19.7 | 19.5 | 19.9 | 19.9 | 10.0 | 10.0 | 2.6                 | 3.0        | 6.6        | 18.2     |
| 그리스     | 20.0                                               | 20.0 | 20.0 | 20.0 | 20.0 | 6.7  | 13.3 | 3.1                 | 3.7        | 7.9        | 24.7     |
| 헝가리     | 30.5                                               | 30.0 | 26.5 | 29.5 | 33.5 | 9.5  | 24.0 | 1.1                 | 5.8        | 6.8        | 17.3     |
| 아이슬란드   | 별도의 연금기여금은 존재하지 않음                                 |      |      |      |      |      |      |                     |            |            |          |
| 아일랜드    | 별도의 연금기여금은 존재하지 않음                                 |      |      |      |      |      |      |                     |            |            |          |
| 이스라엘    |                                                    |      | 6.1  | 6.2  | 6.9  | 3.9  | 3.1  |                     |            |            |          |
| 이탈리아    | 28.3                                               | 32.7 | 32.7 | 32.7 | 32.7 | 9.2  | 23.8 | 2.1                 | 6.5        | 8.6        | 19.9     |
| 일본      | 16.5                                               | 17.4 | 13.9 | 14.6 | 15.4 | 7.7  | 7.7  | 2.9                 | 2.9        | 5.8        | 20.4     |
| 한국      | 6.0                                                | 9.0  | 9.0  | 9.0  | 9.0  | 4.5  | 4.5  | 1.5                 | 1.0        | 2.5        | 9.3      |
| 룩셈부르크   | 16.0                                               | 16.0 | 16.0 | 16.0 | 16.0 | 8.0  | 8.0  | 2.6                 | 2.4        | 6.0        | 16.5     |
| 멕시코     | 사적연금(Private pension contributions)에 대한 기여금만<br>존재 |      |      |      |      |      |      | 0.0                 | 0.0        | 0.0        | 0.0      |
| 네덜란드    | 17.9                                               | 17.9 | 17.9 | 17.9 | 17.9 | 17.9 | 0.0  |                     |            |            |          |
| 뉴질랜드    | 기여금(contribution) 없음                               |      |      |      |      |      |      | 0.0                 | 0.0        | 0.0        | 0.0      |
| 노르웨이    | 별도의 연금기여금은 존재하지 않음                                 |      |      |      |      |      |      |                     |            |            |          |
| 폴란드     |                                                    | 19.5 | 19.5 | 19.5 | 19.5 | 9.8  | 9.8  | 3.6                 | 2.7        | 7.7        | 22.1     |
| 포르투갈    | 별도의 연금기여금은 존재하지 않음                                 |      |      |      |      |      |      |                     |            |            |          |
| 슬로바키아   | 28.5                                               | 27.5 | 26.0 | 24.0 | 18.0 | 4.0  | 14.0 | 0.8                 | 2.3        | 4.1        | 13.8     |
| 슬로베니아   |                                                    |      | 24.4 | 24.4 | 24.4 | 15.5 | 8.9  |                     |            |            |          |
| 스페인     | 29.3                                               | 28.3 | 28.3 | 28.3 | 28.3 | 4.7  | 23.6 | 1.3                 | 6.8        | 9.0        | 24.2     |
| 스웨덴     | 19.1                                               | 15.1 | 18.9 | 18.9 | 18.9 | 7.0  | 11.9 | 2.6                 | 3.7        | 6.4        | 13.3     |
| 스위스     | 9.8                                                | 9.8  | 9.8  | 9.8  | 9.8  | 4.9  | 4.9  | 2.7                 | 2.7        | 5.9        | 20.3     |
| 터키      | 20.0                                               | 20.0 | 20.0 | 20.0 | 20.0 | 9.0  | 11.0 | 1.1                 | 1.1        | 2.2        | 9.3      |
| 영국      | 별도의 연금기여금은 존재하지 않음                                 |      |      |      |      |      |      |                     |            |            |          |
| 미국      | 12.4                                               | 12.4 | 12.4 | 12.4 | 12.4 | 6.2  | 6.2  | 2.3                 | 2.3        | 4.6        | 16.3     |
| OECD 평균 | 19.2                                               | 19.3 | 20.0 | 19.8 | 19.6 | 8.4  | 11.2 | <b>1.8</b>          | <b>2.9</b> | <b>5.1</b> | 14.2     |

자료: OECD(2011), Pensions at a Glance 2011.

---

■ OECD 국가의 근로자와 고용주의 총 기여액은 각각 GDP의 1.8%와 2.8%로 나타나고 있으며, 핀란드의 경우 연금 보험료로 거두어들인 정부 수입이 GDP의 9.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1) 참조).

● OECD 국가의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전체 연금보험료의 35%를 납부하며, 고용주는 총보험료의 57%를 납부하게 됨.

– 나머지는 자영업자의 기여금이며, 실업자 등 다른 계층의 기여금 또한 포함되어 있음.

■ 한편, 대다수 국가들은 공적연금의 기여대상 또는 급여산정소득(pensionable earnings)에 상한(ceiling)과 하한(floor)을 설정하고 있음.

● 사회보험 성격을 지닌 공적연금 보험료 산정은 월소득 기준으로 하한액보다 적을 때는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을 때는 상한액을 기준으로 함.

– 기준 월소득액이 하한에 못 미치는 경우는 미래에 작은 연금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는 연금보험료를 과다하게 부담하여 향후 과다한 연금액을 수령하지 않도록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함.<sup>4)</sup>

■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한 기초연금중심 국가는 상한소득을 낮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고, 보험성격의 소득비례연금중심 국가는 상한소득을 다소 높게 설정함.

● OECD 21개 회원국의 공적연금의 평균 상한선은 경제활동인구 소득의 185%에 해당하며,<sup>5)</sup> 기여금에 하한선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저소득층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음. **키리**

---

4)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은 360만 원, 하한은 22만 원으로 제도 도입(1995년) 이후 2009년 까지 변화가 없었으나, 2010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을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을 따져 매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3,890,000원과 240,000원이며, 이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연금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액은 각각 350,100원과 21,600원임.

5) OECD(2011), Pensions at a Glance 2011.



## 연금제도의 국제 비교 (5): 연금제도의 모수 - 적립률

김동겸 선임연구원

- 소득비례연금제도(earning-related schemes)<sup>1)</sup>에서 수급자가 은퇴 후 수령하는 급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적립률(accrual rate), 급여산식에 사용되는 개인소득의 측정방식(earnings measures to calculate benefits)과 재평가방식(valorisation) 등을 들 수 있음.
- 적립률 또는 급여적립요율이란 연금지급액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근로자가 일년 동안 근무함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함.<sup>2)</sup>
  - 일반적으로 적립률은 연금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모수의 백분율(a percentage of the earnings that are covered by pension schemes)로 표현함.<sup>3)</sup>
  -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국가가 지급해야 할 연금지급액이 늘어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대다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모수적 개혁(parametric reform)<sup>4)</sup>의 일환으로 연금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하거나, 적립률을 축소시키는 정책을 취함.
- OECD 회원국 중 7개국(호주, 칠레, 덴마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은 제2층의 소득비례연금제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대다수 국가는 연금산식에 적립률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전통적인 확정급여(DB) 방식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표 1> 참조).<sup>5)</sup>

1) 소득비례연금(earnings-related scheme) 또는 소득대체연금(income-replacement pensions)은 OECD의 노후소득보장제도(retirement-income provision)의 분류기준 중 “이층(second tier)”에 해당되는 제도로써, 크게 확정급여형(DB), 점수(points), 명목계정(NDC: notional accounts) 연금제도로 분류할 수 있음.

2) OECD(2005, 2011)에서는 적립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The accrual rate shows the rate at which benefit entitlements build up for each year of coverage,” or “It is the rate at which pension benefits builds up as member service is completed in a defined benefit plan,” 한편, 적립률이라는 용어는 저자에 따라 (연간연금)지급률, (이자)발생률, 증액율, 수급률, 연간급여승률, 급여율, 급여적립요율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도 함.

3) 대다수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연금급여 산정 시 근로자 소득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 이와 같이 부과상한을 두는 근거는 고소득 근로자가 대체율을 높이고 싶다면 개별적인 저축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임.

4) 연금제도의 틀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지 않고 연금산식을 구성하는 일부 변수를 조정하는 접근방법을 모수적 개혁(parametric reform, 母數的改革)이라 하는데,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연장, 연금지급률 하향조정, 보험요율 인상 등이 이에 해당됨.

〈표 1〉 OECD 국가의 소득비례연금(income-replacement pensions)의 적립률

| 국가    | 소득비례연금             |                                 | 국가    | 소득비례연금             |                                 |
|-------|--------------------|---------------------------------|-------|--------------------|---------------------------------|
|       | 제도유형 <sup>1)</sup> | 적립률(%)                          |       | 제도유형 <sup>1)</sup> | 적립률(%)                          |
| 호주    | None               |                                 | 일본    | DB                 | 0.55                            |
| 오스트리아 | DB                 | 1.78                            | 한국    | DB                 | 0.89                            |
| 벨기에   | DB                 | 1.33                            | 룩셈부르크 | DB                 | 1.85 [ <b>y</b> ] <sup>5)</sup> |
| 캐나다   | DB                 | 0.63                            | 멕시코   | None               |                                 |
| 칠레    | None               |                                 | 네덜란드  | DB                 | 1.75                            |
| 체코    | DB                 | 0.45 [ <b>w</b> ] <sup>2)</sup> | 뉴질랜드  | None               |                                 |
| 덴마크   | None               |                                 | 노르웨이  | NDC                | 0.98                            |
| 에스토니아 | Points             | 1.0                             | 폴란드   | NDC                | 0.67                            |
| 핀란드   | DB                 | 1.5 [ <b>a</b> ] <sup>3)</sup>  | 포르투갈  | DB                 | 2.25 [ <b>w</b> ] <sup>2)</sup> |
| 프랑스   | DB / Points        | 1.75 [ <b>w</b> ] <sup>4)</sup> | 슬로바키아 | Points             | 1.25                            |
| 독일    | Points             | 1.00                            | 슬로베니아 | DB                 | 1.81                            |
| 그리스   | DB                 | 2.57 <sup>4)</sup>              | 스페인   | DB                 | 3.0 [ <b>y</b> ] <sup>6)</sup>  |
| 헝가리   | DB                 | 1.22                            | 스웨덴   | NDC                | 1.21 [ <b>w</b> ]               |
| 아이슬란드 | DB                 | 1.40                            | 스위스   | DB                 | [ <b>w</b> / <b>a</b> ]         |
| 아일랜드  | None               |                                 | 터키    | DB                 | 2.00                            |
| 이스라엘  | None               |                                 | 영국    | DB                 | 0.89 [ <b>w</b> ] <sup>6)</sup> |
| 이탈리아  | NDC                | 1.75                            | 미국    | DB                 | 0.91 [ <b>w</b> ] <sup>2)</sup> |

- 주: 1) 2층 소득연계연금의 유형에서 DB는 확정 급여형, NDC는 명목저축계좌를, Points는 점수 제도를 의미함.  
 2) [**w**]는 소득(earnings)에 따라 급여 수령액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체코, 포르투갈,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고소득층보다 급여적립요율이 더 높음.  
 3) [**a**]는 연령(age)에 따라 급여액이 차등 지급됨을 의미하며, 핀란드는 고연령층이 저연령층보다 적립률이 높음.  
 4) 프랑스의 경우 퇴직연금제도(occupational plan) 하에서 고소득자의 적립률은 저소득자 보다 높음.  
 5) [**y**]는 근속기간(years of service)에 따라 급여 수령액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룩셈부르크는 근무연수가 길수록 적립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6) 영국의 경우 저소득층의 경우 적립률이 가장 높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적립률이 낮아지다 일정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다시 높아지는 형태를 띤.

자료: OECD(2011), Pensions at a Glance 2011.

- 5) 확정급여형에서의 적립률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연금액(DB)은 다음과 같이 산출됨.  $DB = \sum_{i=0}^R w_i (1+u)^{R-i} a$  여기에  
 서,  $R$ 은 은퇴시점을,  $w_i$ 는  $i$ 년도 소득을,  $u$ 는 소득재평가 계수를,  $a$ 는 적립률을 의미함. 한편, 점수(points)제도에 있어  
 적립률(effective accrual rate)은 연금점수비용 대비 연금점수 지급액의 비율로 산출함.

■ 소득비례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절반 정도는 가입기간 동안 동일한 적립률(linear accrual rate)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개인의 소득, 연령, 가입기간에 따라 매년 얻게 되는 연금급여를 다르게 설정하는 국가 또한 존재함.

- 개인소득에 따라 적립률이 다른 국가는 체코, 포르투갈, 스위스,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총 7개 국가임.
  - 체코, 스위스, 포르투갈, 미국의 공적연금제도에서는 누진적(progressive)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대체율이 더 큰 반면, 프랑스와 스웨덴은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 더 높은 대체율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한편, 영국의 경우 적립률이 저소득 계층에서 크고 이후에는 작아졌다가 고소득계층에서 다시 커지는 U자 형태를 보임.
- 한편, 핀란드와 스위스의 경우, 퇴직연금제도(occupational plans)의 적립률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구조를 띠고 있으며, 룩셈부르크와 터키는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률이 차등화 된 형태를 보임.
  - 룩셈부르크는 가입이력이 긴 사람들에게 높은 적립률이 적용되는 반면, 스페인과 터키는 경우는 초기 몇 년 동안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적립률이 적용되고, 후반기에는 가장 낮은 적립률을 적용함. **kiri**



# 금융보험 해설 / 퇴직연금의 이해

- |                                        |     |
|----------------------------------------|-----|
| 1. 퇴직연금의 이해 (2):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 오병국 |
| 2. 퇴직연금의 이해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용 | 오병국 |
| 3. 퇴직연금의 이해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용 | 오병국 |
| 4. 퇴직연금의 이해 (5):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및 업무수행     | 오병국 |
| 5. 퇴직연금의 이해 (6): 퇴직연금제도 운영 관계자의 책무와 감독 | 오병국 |
| 6. 퇴직연금의 이해 (7):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장치        | 오병국 |
| 7. 퇴직연금의 이해 (8):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특징         | 오병국 |
| 8. 퇴직연금의 이해 (9):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유형         | 오병국 |
| 9. 퇴직연금의 이해 (10): 퇴직연금의 계약구조           | 오병국 |





## 퇴직연금의 이해 (2):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오병국 연구원

■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할 경우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을 취하고 있음.
-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2012년 7월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퇴직 이후 받을 급여의 수준을 약정하여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미리 정해진 퇴직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함.
  - 사업자의 비용은 약정된 퇴직급여를 제공하기에 필요한 부담금임.
  - 사업주는 연금기금의 운용수익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을 보충해야할 책임이 있음.
- 기업에서 운용하는 연금자산의 운용성과가 좋을 경우 납부부담금을 경감시킬 수 있음.
  - 반면, 기업에서 운용하는 연금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적립부족금이 발생할 경우 우발채무가 발생하는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
- 근로자의 퇴직 시 특정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목표로 하여 이를 달성하고자 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 기업이 도산할 경우 지급보장장치의 한계로 인해 퇴직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퇴직소득의 감소를 경험할 수 있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사업주가 급여의 일정비율 또는 급여에 상관없이 일정금액 등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의 적립금액과 운용수익의 합계금액에 의해 퇴직연금의 급여수준이 결정됨.
  - 사업주는 약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책임을 가짐.

- 근로자가 받게되는 퇴직급여는 자산운용성과, 퇴직연령 등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 적립금이 급여를 반영하여 계산되어 있고, 적립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서 근로자별로 분리하여 관리하므로 퇴직급여 확보의 안전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임.
- 예를 들면 퇴직일시금의 경우 퇴직시점에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확정되므로 퇴직시점에서 기업의 경영악화로 급여가 삭감되거나 연봉제 및 성과급제 등에 의해 급여가 감소되는 경우에 퇴직금도 함께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연금자산관리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개인퇴직계좌제도(IRA)<sup>1)</sup>를 개편한 것이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기존의 개인퇴직계좌제도의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가입할 수 있음.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근로자는 확정급여형 혹은 확정기여형 가입으로 인해 정해진 부담금 이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음.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키리**

〈표 1〉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특징

| 구분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
| 사업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에서 운용하는 연금자산의 운용성과가 좋을 경우 납부부담금을 경감시킬 수 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퇴직급여의 우발채무가 발생하지 않아 연금자산의 운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동 제도의 설정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할 수 있음</li> </ul>                                        |
| 근로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에서 운용하는 연금자산의 운용성과에 관계없이 확정된 수급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음</li> <li>지급보장제도의 한계로 기업과 산 시 수급금액이 예기치 않게 감소할 수 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립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의 수급금액이 증가할 수 있음</li> <li>장래에 수령할 수 있는 수급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가입할 수 있음</li> <li>확정급여형 혹은 확정기여형 부담금 이외에도 근로자 본인의 추가기여가 가능함</li> </ul> |

1) 개인퇴직계좌는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계속 적립되어 근로자의 은퇴 시 연금 또는 일시금형태로 수령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또한, 개인퇴직계좌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 설정한 저축계좌로 정의될 수 있음.



## 퇴직연금의 이해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용

오병국 연구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sup>1)</sup>에서는 회사가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을 설정하고 운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근퇴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관한 규약의 설정, 가입기간, 급여수준, 급여 지급능력 확보,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운용현황의 통지 등에 걸쳐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규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급여 지급능력 확보,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 운용관리 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에 이전에 관한 사항, 운용현황의 통지
-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이상의 내용을 상회하는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이밖에 근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가입기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 당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당해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음.
  - 다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함.

1) 이하 '근퇴법'으로 통칭함.

- 
- (급여수준)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하는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책임준비금의 60% 이상을 기반으로 산출한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 기준책임준비금은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여 산정함.
      -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
      -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함.
  -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종류는 연금 혹은 일시금<sup>2)</sup>으로 하며,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음.
    -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 (운용현황의 통지)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함. **키리**

---

2) 일시금은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함.



# 퇴직연금의 이해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용

오병국 연구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sup>1)</sup>에서는 회사가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을 설정하고 운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근퇴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관한 규약의 설정,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적립금의 중도인출, 복수사용자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근퇴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규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이상의 내용을 상회하는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이외에 근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함.

-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이외에 스스로 납입하는 부담금을 본인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추가로 납부할 수 있음.

1) 이하 '근퇴법'으로 통칭함.

- 
-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부하여야 함.
    -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부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함.
    -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함.
  - (적립금 운용방법)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
    - 퇴직연금 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이는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해 위험과 예상수익률이 다른 다양한 운용방법을 제시하여 가입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임.
  - (적립금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 퇴직연금 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적립금의 중도인출)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음.
    -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허용함으로써 가입자의 예측하지 못한 일시금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복수사용자 설정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을 제안하려면 표준규약, 운용관리 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kiri**



## 퇴직연금의 이해 (5):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및 업무수행

오병국 연구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sup>1)</sup>에서는 금융기관 등이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등록요건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근퇴법은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금융기관 등이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근퇴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음.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 보험회사: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의거
- 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거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의거
-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의거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의거,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이어야 함.

■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퇴직연금사업의 이전을 명령할 수 있음.

- (등록 취소)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해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요건의 비충족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등록이 취소된 퇴직연금사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등록 할 수 없음.

1) 이하 '근퇴법'으로 통칭함.

- (등록의 말소) 퇴직연금사업을 중단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록을 말소할 수 있음.
  - 등록이 말소된 퇴직연금사업자는 말소된 날부터 2년간 등록 할 수 없음.
- (이전 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 다만, 이전을 받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함.

■ 한편,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혹은 가입자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함.

-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처리
  -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 사업주 또는 가입자가 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할 것
-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계좌의 설정 및 관리
  - 부담금의 수령
  -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 급여의 지급

■ 게다가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관의무를 준수해야하고, 적립금을 운용할 때 정보에 대한 접근용이성, 운용방법 변경의 유연성, 운용결과의 투명성, 자산운용의 안전성 등이 요구됨.

-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
-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함.
  -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 운용방법 간의 변경이 쉬울 것
  -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 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해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kiri**



## 퇴직연금의 이해 (6): 퇴직연금제도 운영 관계자의 책무와 감독

오병국 연구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sup>1)</sup>에서는 퇴직연금 사용자, 사업자, 정부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자의 책무와 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근퇴법은 제7장 책무 및 감독 편에서 사용자·사업자·정부의 책무, 사용자·사업자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퇴직연금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가입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책무가 부여되고, 가입자 보호를 위해 적정한 퇴직연금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금지됨.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게다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이 금지됨.

■ 퇴직연금사업자에게는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법령 및 계약준수 의무, 충실의무가 부여됨.

● 퇴직연금사업자는 근퇴법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용관리 혹은 자산관리 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운용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퇴직연금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됨.

–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 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

–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의 정보를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 나서 사용하는 행위

1) 이하 ‘근퇴법’으로 통칭함.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년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개인퇴직계좌도 확정기여형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이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의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임.

●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사용자,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

■ 정부도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해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지급 보장을 위한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함.

■ 또한, 근퇴법은 퇴직연금 사용자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또는 그 운영 등에 관하여 근퇴법 또는 퇴직연금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퇴직연금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하기 위한 근거를 둔 것임.

●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근퇴법의 규정에 의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근퇴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을 명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해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근퇴법에서 규정한 책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자·임직원에 대한 주의·견책·감봉·정직·면직,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 정지, 6개월 이내 영업의 일부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음. **키리**



## 퇴직연금의 이해 (7):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장치

오병국 연구원

-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최소적립금 제도, 퇴직급여우선변제 제도,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예금자보호제도 등의 수급권보호 장치를 두고 있음.
- 최소적립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sup>1)</sup> 제16조에 의해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급여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기준책임준비금의 일정 부분 이상을 사내에 적립해야 하는 것을 말함.
  - 현행 근퇴법에서는 최소적립금을 기준책임준비금의 60%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음.
    - 여기서 기준책임준비금은 계속기준에 의한 책임준비금 또는 비계속기준에 의한 책임준비금 중 더 큰 금액임.
  - (적기시정 조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함.
    - 만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회사의 근로자 대표에게 알려야 함.
- 또한, 사용자인 기업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도산할 경우 연금지급 보증장치로서 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예금자보호제도 등이 있음.
  - (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 근퇴법에서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사용자의 총자산에 대하여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업이 도산할 경우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가 법적으로 보장됨.

1) 이하에서는 ‘근퇴법’으로 통칭함.

-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범위까지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보장함.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은 기업의 부담금으로 충당하며,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일정 부담금 비율을 곱하여 결정함.
  - 퇴직근로자에게 보상되는 금액은 월별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음.
- (예금자보호제도)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에는 원리금 보장분에 한하여 금융기관 도산 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 원 한도로 지급보장이 이루어짐. **키리**

〈표 1〉 퇴직연금 수급권보호 장치 비교

| 구분         | 보상범위                     | 적용대상                   | 관련법         |
|------------|--------------------------|------------------------|-------------|
| 최소적립금제도    | 최소적립금 이내                 | 확정급여(DB)형              | 근퇴법 제16조    |
| 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 | 최종 3년분에 한정               | 퇴직급여 대상                | 근퇴법 제12조    |
|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 최종 3년분에 한정,<br>월별 상한액 설정 | 임금·휴업수당 및<br>퇴직금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
| 예금자보호제도    | 5,000만 원 한도              | 확정기여(DC)형,<br>개인형(IRP) | 예금자보호법      |



## 퇴직연금의 이해 (8):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특징

오병국 연구원

■ OECD 연금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는 “연금펀드 소유자인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대한 연금이 약속대로 지급되도록 연금펀드를 운영하는 매커니즘”을 퇴직연금의 지배구조로 정의하고 있음.

● 연금지배구조는 퇴직연금이 주식투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주행동,<sup>1)</sup> 퇴직연금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내부통제,<sup>2)</sup> 수급권보호<sup>3)</sup> 등에 대한 법령·규제, 임의규범과 시장의 기능 등에 의해 규율되는 매커니즘이라 할 수 있음.

■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크게 소유자와 경영자 분리로 인한 이해상충과 사용자와 근로자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 볼 수 있음.

● 퇴직연금에서는 연금펀드운용과 관련하여 소유자와 경영자(운영자)의 분리로 인해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연금납부자인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자신들이 직접 연금자산을 운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에 연금자산 운용을 위탁하게 됨.
- 이 경우 연금납부자의 이익인 근로자의 연금수익 또는 연금지급채무를 지닌 사용자의 이익과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의 이익인 운용수수료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연금납부자측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 DB형에서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운용 책임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연금의 운용과정에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축소하거나 관련 비용을 절감하여 손실을 보상하려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음.

1)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연금펀드가 행하는 의결권 행사 등.

2) 퇴직연금을 대상으로 한 지배구조의 활동으로써 기업이 주주가치를 유지하면서 약속한 급여를 확실히 지급하기 위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내부통제활동 등.

3) 연금가입자 납부금액으로 조성된 연금적립금인 연금펀드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퇴직연금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련의 활동 등.

- DC형에서는 상품선택, 연금운용과정에서 근로자의 전문성과 정보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어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상품 선정과정에서 사용자 의견을 많이 참고함에 따라 근로자 이익보다는 사용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의사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 지배구조에는 수탁자책임의무부과, 연금자산운용에 대한 감시, 근로자수급권 보호장치, 공시의무 등이 구성요소로서 포함됨. **키리**

〈표 1〉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일반적 특징

| 구분      |                   | 특징                                                            |                                              |
|---------|-------------------|---------------------------------------------------------------|----------------------------------------------|
| 개념      | 본인<br>(principal) | 근로자(소유자)                                                      | 소유와 운영의 분리                                   |
|         | 대리인<br>(agent)    | 연금수탁자·사용자(경영자)                                                |                                              |
| 대리인 수   |                   | 다수                                                            | 퇴직연금 대리인, 사용자,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자산운용자, 정부     |
| 지배구조 형태 |                   | 제도별(DB, DC, IRP), 근로자와 수탁자별, 지배구조유형별(기금형, 계약형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 | 퇴직연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지배구조의 일반적 형태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 |
| 지배구조 요소 |                   | 수탁자책임의무부과, 연금자산운용에 대한 감시, 수급권보호장치, 공시의무 등                     | 근로자, 사용자, 수탁기관, 정부 간의 이해상충을 고려               |

자료: 류건식·김대환·이상우(2013),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정책보고서.



## 퇴직연금의 이해 (9):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유형

오병국 연구원

■ 퇴직연금제도의 지배구조는 연기금 운용형태, 사용자와 운영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의 역할 관계 등 연기금 운용구조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형, 기금형, 회사형 등으로 분류됨.

■ 계약형은 연금제도 관리 및 기금운용 등을 일괄적으로 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에 위탁하는 형태

- 계약형의 경우 관리 및 운용주체가 금융회사가 되며, 경영자 주도에 따라 근로자와 금융회사 간 연금계약이 체결됨.
- 금융회사가 연금제도에 관한 제도설계, 연금관리 및 기금운용 등을 일괄 수탁하는 형태이므로, 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와 가입자인 근로자 사이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보험회사, 투신사 등 제2금융권 회사들의 상당수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전염 효과(contagion effect)가 발생할 수 있음.

■ 기금형<sup>1)</sup>은 퇴직연금 제공 회사와 별도로 독립법인 형태의 연기금을 설치해 운영하는 구조임.

- 기금형의 경우 주요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짐.
- 일반적으로 기금형은 노사 신뢰를 기반으로 기금에서 직접, 또는 펀드매니저를 고용하여 기금을 운용하는데,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 회사형은 산업별로 별도의 연기금을 설립해 회사처럼 운영하는 것으로 주로 사회연대가 공고한 국가<sup>2)</sup>에서 운영되고 있음.

- 회사형은 산업별로 공단을 설치·운영하는 형태로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의 역할을 대체함.

1) 주로 영국, 미국 등 앵글로색슨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음.

2)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등이 있음.

- 회사형은 산업별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연금 지급불능 사태가 쉽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키리**

〈표 1〉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유형

| 구분         | 계약형                  | 기금형(회사형 포함)                |
|------------|----------------------|----------------------------|
| 연금관리형태     | 금융회사에 일괄적 위탁         | 독립적인 퇴직연금 기금설치             |
| 관리 및 운용주체  | 금융회사<br>(운영기관, 관리기관) | 기금에서 직접수행 혹은<br>기금운용의 외부위탁 |
| 연금운용의 주요결정 | 계약<br>(경영자 주도)       | 연기금위원회<br>(노사동수)           |
| 근로자참여      | DC는 근로자 직접 투자        | 노조가 있는 경우 적극 참여            |
| 운용감독       | 금융기관이 대상             | 개별연금기금감독                   |

자료: 류건식·김대환·이상우,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정책보고서 2013-2, 보험연구원.



## 퇴직연금의 이해 (10): 퇴직연금의 계약구조

오병국 연구원

■ 퇴직연금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운용관리, 자산관리 서비스로 나눌 수 있음.

- 운용관리 서비스는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 적립금 운용방법 및 관련 정보 제공, 적립금 운용 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자산관리기관에게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전달하는 업무 등임.
- 자산관리 서비스<sup>1)</sup>에는 연금계좌의 설정 및 관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관리, 운용지시에 따른 금융상품 매매, 가입자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 등의 업무가 포함됨.

■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운영하려는 기업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선정해야 하며, 선정방식에 따라 번들(bundle)형과 언번들(unbundle)형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이 제도를 운영할 때 필요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기관을 동일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이 번들형,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언번들형임.

■ 퇴직연금의 번들형 계약과 언번들형 계약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기업이 번들형 계약을 선택할 경우, 단일 사업자와 운영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게 됨.
  - 한 사업자로 단일화된 운영 창구를 통해 운용 및 자산관리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으나 제도의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업무가 구분될 경우 존재할 수 있는 사업자 간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기업이 언번들형 계약을 선택하면, 운용 및 자산관리 각각의 전문사업자를 선정하여 복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는 사업자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에 의해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계약의 유형으로는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1:1 방식, 하나의 운용 관리 계약과 여러 개의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1:N 방식, 여러 개의 운용관리계약과 여러 개의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N:N 방식이 있음.
- 운용관리 서비스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구분하여 제공받으므로 각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유리함.
- 그러나 여러 사업자 통제의 어려움, 사업자 간 정보의 비대칭 및 커뮤니케이션 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 기업의 퇴직연금 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요구됨.

〈표 1〉 퇴직연금 계약구조 형태

| 구분                    | 번들(bundle)형        | 언번들(unbundle)형             |
|-----------------------|--------------------|----------------------------|
| 계약체결 형태               | 단일사업자와 퇴직연금 계약체결   | 복수의 사업자와 퇴직연금 계약체결         |
| 운영창구의 단일화 여부          | ○                  | ×                          |
| 제도관리 및 운영의 복잡성        | 낮음                 | 높음                         |
| 운용 및 자산관리사업자 간 업무 흐름  | 원활함                | 사업자 간 이행상충 문제 발생 시 원활하지 못함 |
| 투자상품의 다양성 및 상품변경의 용이성 | 상품 line-up에 따라 다양함 |                            |

■ 우리나라의 경우 근퇴법에서 동일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한 퇴직연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계약 체결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퇴직연금 계약구조가 번들형임.

- 2010년 DB형 및 DC형 퇴직연금 도입기업 중 단일 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비중이 80% 이상<sup>2)</sup>임. **키리**

2) 류건식·김대환·이상우,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정책보고서 2013-2.



# 금융보험 해설 / 기타

1.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1) :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와 역사 | 이아름

K O R E A  
I N S U R A N C E  
R E S E A R C H  
I N S T I T U T E





#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1) :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와 역사

이아름 연구원

■ 현재 프랑스 사회보장제도(protection sociale)는 사회보험제도(régime d'assurance sociale)를 주축으로 사회부조(assistance sociale)<sup>1)</sup>를 확대한 이중구조의 복지체계를 가지고 있음.

● 사회보험제도는 경제활동인구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질병, 고령, 산업재해, 가족부양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상 중심으로 운용되며 대부분의 사회보장 공공제도(régime des administrations de sécurité sociale)를 포함함.

– 의무 가입인 사회보장 공공제도에는 일반제도(régime general de sécurité sociale), 특별기금(fonds spéciaux), 자율제도 및 농업제도 등의 법정 기초제도(régime de base)와 보충제도가 있음.

● 사회부조는 수급자들의 자산조사를 시행하여 사회보험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계층에게 적용됨.

– 대표적인 사회부조로는 일정한 사회적 최저수준의 생활지원을 위한 최저생활보장(minima sociaux)제도가 있음.

■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은 사회보험제도의 태동기, 확대기, 정착기로 구분할 수 있음.

● 19세기 말 프랑스는 빈곤층을 위한 복지에 중점을 두고 사회부조 법안이 제정되는 한편, 다양한 사회보험제도 관련 법안도 새롭게 제정됨.

– ‘학대받고 방치된 아동보호 법안’(1889), ‘고아원아동 보호법안’(1904), ‘노인, 병약자, 불치병 환자를 위한 법안’(1905), ‘다자녀 빈민가정을 위한 법안’(1913)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부조 법안이 제정됨.

– ‘공제조합법’(1898), ‘산재보상보험’(1898), ‘근로자와 농민을 위한 퇴직연금제도’(1910), ‘의무 사회보험법안’(1930), ‘가족수당 확대’(1939) 등 사회보험제도 관련 법안이 제정됨.<sup>2)</sup>

1) 사회부조는 사회보험의 보상 수준이 미흡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급여대상자들의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따라 지급되는 보충급여임.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프랑스.

- 1930년에 이르러 질병, 출산 및 양육, 장애, 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보험이 의무화되어 지속적으로 사회보험 수혜자가 확대됨.
  - 사회보험 적용대상이 민간부문 상공업 근로자에서 나아가 비임금노동자에 대한 가족수당의 혜택이 마련됨에 따라 사회보험이 확대됨.
- 1945년 이후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단일화하고 대중화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함.
  - 사회보장제도를 통일화시키기 위해 일반제도(régime general)를 만들었으나 특수직종<sup>3)</sup> 및 농업종사자, 자영업자의 반발로 특별제도, 자율제도, 농업종사자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 등이 만들어짐에 따라 다원적체계로 변화하였음. **키리**

〈표 1〉 현재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구조

|                                              |                                                                                               |                                                                  |                                                       |
|----------------------------------------------|-----------------------------------------------------------------------------------------------|------------------------------------------------------------------|-------------------------------------------------------|
| 사회보장제도<br>(comptes de la protection sociale) | 사회보험제도<br>(régime d'assurances sociales)                                                      | 사회보장<br>공공제도<br>(régime des administrations de sécurité sociale) | 일반제도(régime general de sécurité sociale)              |
|                                              |                                                                                               |                                                                  | 특별기금(fonds spéciaux)                                  |
|                                              |                                                                                               |                                                                  | 농업근로자제도(MSA: régime des salariés agricoles)           |
|                                              |                                                                                               |                                                                  | 그 외 근로자의 특별제도(autre régimes particuliers de salariés) |
|                                              |                                                                                               |                                                                  | 근로자의 보충제도(régime complémentaires de salariés)         |
|                                              |                                                                                               |                                                                  | 농업경영자제도(MSA: régime des exploitants agricoles)        |
|                                              |                                                                                               |                                                                  | 자영업자제도(RSI: régime non salariés non agricoles)        |
|                                              |                                                                                               |                                                                  | 실업보상제도(régime d'indemnisation du chômage)             |
|                                              | 고용주 직접제도(régime directs d'employeurs)                                                         |                                                                  |                                                       |
|                                              | 공제, 추가보충연금, 상호부조제도(régime de la mutualité, de la retraite supplémentaire et de la prévoyance) |                                                                  |                                                       |
|                                              | 사회부조(assistance sociale)                                                                      |                                                                  |                                                       |
|                                              | 그 외 고용주 보험(autres régimes d'employeurs)                                                       |                                                                  |                                                       |

자료: Base 2000(2007), 「Les Administrations de Sécurité Sociale」, INSEE;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재인용.

3) 특수직종은 공무원, 광부, 선원, 철도 및 전력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을 일컬음.

**kiri Weekly 포커스·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발행일 | 2014년 2월

발행인 | 강 호

발행처 | 보험연구원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연락처 | 02-3775-9000

인쇄소 | 경성문화사 / 02-786-2999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